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168-10
청소년보호 2003-18

2003 청소년보호백서

2003. 10.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 소 년 보 호 백 서

연구책임자 : 고 성 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공동연구자 : 정 진 희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배경 ····· 3
제2절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 ····· 4
제3절 인권의 개념과 의의 ····· 6
제4절 청소년 인권의 내용 ····· 7

제2장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

제1절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 15
제2절 청소년의 정신건강 ····· 17
1. 스트레스 ····· 18
2. 고민과 걱정거리 ····· 22
3. 우울 ····· 24
4. 자살 ····· 25
제3절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 28
1. 여가활용 시간 ····· 29
2. 여가활용 방법 ····· 29
3.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 31
4. 희망하는 여가활동 ····· 32
5. 문화생활 경험률 ····· 33
6. 단체활동 경험률 ····· 35
7. 사회참여 활동 ····· 37

제3장 가정과 청소년 인권

제1절 이혼 가정 ····· 42
제2절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 46
제3절 폭력가정 ····· 51
1. 아동학대의 실태 ····· 52
2. 학대행위자와 장소 ····· 58
3. 학대 당시 부모의 상황 ····· 59
4. 친족 성학대 ····· 61

제4장 학교와 청소년 인권

제1절 물리적 교육여건 ····· 67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67
2. 학급당 학생 수 ····· 68
3. 진학률 ····· 68
4.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 69
5. 교육비 ····· 70
6. 중도탈락 ····· 72
7. 학교 주변 유해환경 ····· 73
제2절 주관적 학교환경 ····· 74
1. 학교생활문제 ····· 74
2. 학교생활 만족도 ····· 76
3. 학교에 대한 혐오 및 회피 ····· 77
4. 교사의 공정성 ····· 78
제3절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지원 ····· 80
1. 교육 보호 청소년 ····· 80
2. 결식 경험 및 학교의 급식 지원 ····· 81
3. 희망 학력 및 성취 가능성 ····· 83
제4절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 ····· 85
1. 의사 표현 및 자율적 참여 ····· 85
2. 학교 규칙의 정당성 ····· 87
3. 학교문제에 대한 대처 ····· 90
4. 교사의 학생 권리 침해 ····· 92
5. 체벌 ····· 93
6. 학교폭력 ····· 97
7.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 침해 ····· 99

제5장 사회와 청소년 인권

제1절 근로 청소년 ····· 104
1.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 104
2. 청소년 취업의 특징 ····· 107
3. 청소년 취업의 문제점 ····· 108
제2절 장애 청소년 ····· 112

1. 장애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 113
2. 장애 청소년의 교육 현황 ····· 114
3. 장애 청소년의 애로 사항 ····· 115
제3절 보호 소년 ····· 117
1. 소년범죄의 실태 ····· 117
2. 소년풍기문란사범 ····· 120
3. 범죄 예방 및 비행청소년 보호활동 ····· 120
4. 보호 소년의 인권침해 현상 ····· 123
제4절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 ····· 125
1. 성착취 ····· 126
2. 성폭력 ····· 130
3. 성매매 ····· 133

제6장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제1절 청소년 인권교육의 현재 ····· 139
제2절 불안전한 사회 ····· 141
제3절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의 노력 ····· 146

참고문헌 ····· 149
부 록 ····· 153

<표 목차>

<표 1-1> 인권의 내용 ····· 9
<표 1-2> 아동권리 협약에 준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내용 ····· 10
<표 1-3> 학생 인권의 내용 ····· 11
<표 2-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15
<표 2-2> 청소년 인구 ····· 15
<표 2-3> 학교 구분별 학령인구 추이 ····· 16
<표 2-4>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 18
<표 2-5>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12-19세) ····· 19
<표 2-6> 스트레스 점수표 ····· 21
<표 2-7> 스트레스 영역에 따른 대처행동 ····· 22
<표 2-8>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 23
<표 2-9> 지난 1년간 우울 인식도(12-19세) ····· 24
<표 2-10> 청소년의 현재의 우울 정도 ····· 25
<표 2-11>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12-19세) ····· 26
<표 2-12> 1997년의 WHO 국가별 자살통계 ····· 27
<표 2-13>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2001년) ····· 28
<표 2-14> 여가활용 방법(복수응답) ····· 29
<표 2-15> 놀이문화 (중복응답) ····· 30
<표 2-16>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31
<표 2-17> 여가・취미생활의 장애 요인 ····· 31
<표 2-18>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 이용률과 희망률 ····· 32
<표 2-19> 1년간 문화생활 경험률 ····· 33
<표 2-20> 문화 예술 및 경기장 시설 이용률 ····· 34
<표 2-21>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역 내 문화시설・공간이용시 문제점 ····· 34
<표 2-22> 한학기 일반도서 독서량 ····· 35
<표 2-23> 현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 36
<표 2-24> 참여 동아리 소속기관 ····· 37
<표 2-25> 동아리(동호회)활동 종류 ····· 37
<표 2-26> 청소년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 38
<표 3-1> 혼인 및 이혼 현황 ····· 43
<표 3-2> 이혼연령 변화추세 ····· 43

<표 3-3> 이혼시 미성년자녀수별 아동수 및 비율 ····· 44
<표 3-4> 혼인상태별 편부모와 자녀 가구 수 및 비율 ····· 44
<표 3-5>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 46
<표 3-6> 성별 소년소녀가정 현황(2001) ····· 47
<표 3-7> 연령별 재학현황별 소년소녀가정 현황(2001) ····· 47
<표 3-8>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0년) ····· 48
<표 3-9> 저소득층 청소년의 복지 프로그램 참여 및 희망 여부 ····· 49
<표 3-10> 가족 문제 ····· 50
<표 3-11> 질병발생시 병원이용을 못하는 정도 ····· 50
<표 3-12>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 ····· 51
<표 3-13> 아동학대의 유형별 피해 정도 ····· 53
<표 3-14> 신체적 학대의 피해 실태(중학생) ····· 53
<표 3-15> 신체적 학대의 피해 실태(고등학생) ····· 54
<표 3-16>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 55
<표 3-17> 신체적 학대 유형 (복수응답) ····· 56
<표 3-18> 정서적 학대 유형 (복수응답) ····· 56
<표 3-19>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56
<표 3-20> 아동학대 발생빈도 ····· 57
<표 3-2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58
<표 3-22> 아동학대 발생장소 ····· 59
<표 3-23> 정서적 학대 발생당시 부모님의 상황 ····· 60
<표 3-24> 부의 실직 및 음주정도에 따른 정서적 학대 ····· 60
<표 3-25> 부의 음주정도, 실직에 따른 정서적 학대 ····· 61
<표 3-26> 친족 성학대의 가해자 분포 ····· 62
<표 3-27> 친족 성학대의 피해 횟수 ····· 62
<표 3-28> 친족 성학대 사실의 노출 ····· 63
<표 4-1> 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 67
<표 4-2>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 68
<표 4-3> 교급별 진학률 (1980 - 2002) ····· 69
<표 4-4>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 현황 (1998-2001) ····· 70
<표 4-5> 학생 1인당 공교육비1) ····· 71
<표 4-6> 교육비 지출률 ····· 71
<표 4-7> 학교 중도탈락률 ····· 72
<표 4-8> 제적 중퇴 및 휴학자 ····· 73

<표 4-9>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실적 ····· 73
<표 4-10>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 74
<표 4-11> 학교생활 문제 ····· 75
<표 4-12>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 ····· 75
<표 4-13> 학생의 학교생활의 만족도 ····· 76
<표 4-14> 교육 현실에 대한 고등학생의 불만 사항 (복수응답) ····· 78
<표 4-15> 교사의 편애 및 차별 요인 ····· 79
<표 4-16> 학교성적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80
<표 4-17> 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 수 : 2001년 ····· 81
<표 4-18> 결식 경험 (도시락포함) ····· 81
<표 4-19> 교육인적지원부 및 보건복지부 학생 급식 지원 현황 ····· 82
<표 4-20> 급식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 82
<표 4-21> 현행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 83
<표 4-22> 희망 학력 ····· 84
<표 4-23> 희망 학력 성취 불가 이유 ····· 84
<표 4-24> 선생님 앞에서 의견 표명 정도 ····· 85
<표 4-25> 학생회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 86
<표 4-26> 교칙(학칙) 제정 과정의 구성원 분석 ····· 88
<표 4-27> 학교규칙 준수 정도 ····· 89
<표 4-28> 부당한 학교문제 발생시 학생의 의견주장 필요성 ····· 90
<표 4-29> 교내 부당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복수응답) ····· 91
<표 4-30> 학생의 사생활 권리의 침해 여부 ····· 92
<표 4-31> 교사 체벌사용의 주요 목적 ····· 95
<표 4-32> 각 사유별 학생의 체벌 당한 경험 유무 ····· 95
<표 4-33> 최근 6개월간 교사로부터 체벌 횟수 ····· 96
<표 4-34> 학생 지도활동시 경험한 위험 ····· 100
<표 5-1> 2002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 105
<표 5-2>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106
<표 5-3>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전망 ····· 107
<표 5-4> 경제활동 참가율의 국제비교(1999년) ····· 107
<표 5-5> 청소년층 실업률 ····· 109
<표 5-6> 연령계층별 ·성별 임금격차 ····· 110
<표 5-7> 청소년들이 꼽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 111
<표 5-8> 학생 청소년 중 일하고 나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 112

<표 5-9> 성 및 연령구분별 장애 출현율 ····· 113
<표 5-10> 특수학교 현황 (2003. 4. 1) ····· 114
<표 5-11> 특수학급 현황 (2003. 4. 1) ····· 115
<표 5-12>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학급 배치 현황 (2003. 4. 1) ····· 115
<표 5-13>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 대우 ····· 116
<표 5-14> 총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 117
<표 5-15>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 118
<표 5-16>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 119
<표 5-17>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 119
<표 5-18> 소년풍기문란사범 단속 처리상황 ····· 120
<표 5-19> 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 121
<표 5-2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 121
<표 5-21> 소년범죄 처리 현황 ····· 122
<표 5-22> 소년보호사건 처리 상황 ····· 123
<표 5-23> 경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124
<표 5-24>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124
<표 5-25>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125
<표 5-26> 소년원에서 경험한 인권침해행위 ····· 125
<표 5-27> 지난 10년간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 ····· 127
<표 5-28>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수 ····· 127
<표 5-29> 사건 죄명유형별 피해 규모 및 대상 분포 ····· 128
<표 5-30>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한 이유 ····· 129
<표 5-31>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률 ····· 131
<표 5-32> 인터넷 성폭력 피해 경험 ····· 132
<표 5-33> 성학대 후유증 ····· 133
<표 5-34>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일반 청소년) ····· 135
<표 5-35>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특수집단 청소년) ····· 135
<표 5-36> 성매매 경험률 ····· 136
<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142
<표 6-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142
<표 6-3> 전화폭력 경험여부(복수응답) ····· 143
<표 6-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43
<표 6-5> 폭력, 학대,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45
<표 6-6> 1년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아 본 비율 ····· 146

<그림목차>

<그림 3-1> 혼인 및 이혼율 추이 ····· 42
<그림 4-1> 학교 회피 이유 ····· 77
<그림 4-2> 교사의 공정성 평가 ····· 79
<그림 4-3> 학교 규칙의 정당성 평가 ····· 89
<그림 5-1>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 129
<그림 5-2> 친구의 업소 취업에 대한 태도 ····· 130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 발전과 이로 인한 활발한 국제적 교류는 우리의 삶과 사고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혜택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사고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의 확산으로 우리의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입시 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아가 양산되고 청소년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혼률의 상승과 편부모가정의 증가, 폭력 가정의 증가 등 가족해체 현상과 이로 인한 빈곤 문제 역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결여된 무기력한 집단,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게 되는 집단 등 생산성이 저하된 집단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며, 잠재력이고, 꿈과 희망이다. 왜냐하면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연자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청소년이 생존권을 보장받으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발전적인 꿈과 희망의 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행 청소년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서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외의 중앙행정기관 16개 부처에서 분산되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는 주관 업무와는 별도로 청소년업무를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업무는 경제개발 우선의 논리에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사안 발생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포되던 청소년 종합대책이나, 각 부처에서 집행하는 개별적인 정책만으로는 현실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더더욱 청소년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청소년 정책은 사회 교육, 문화, 노동, 복지, 산업, 지역사회 및 시민운동 등을 통합한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제도화, 소외 및 소수 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이 인간 중심의 매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정책의 수요와 청소년 관련 문제의 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응해 온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 청소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땅의 청소년이 참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인권 옹호를 위한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존권은 보장되어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욕구 반영을 통한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청소년 실업, 청소년 비행, 청소년 자살 등의 각종 청소년문제를 유발하며, 무기력한 청소년을 양산하게 되며, 경제적・교육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집단의 사회저항의식이 강화되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세계화 속에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제2절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

이 땅의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도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의미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어떠한가? 학생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가치가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이 공존하며 정보화 사회 속에서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도는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널리 확산되어 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과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로 가득한 사회환경 속에서 요즘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보다도 독특한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세대라고 할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이를 확인하려 하며, 물질과 현재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고, 은어, 음악이나 의상을 통해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고 싶어하며 집단에의 소속감과 동시에 집단내 차별화를 꾀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신세대 청소년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체적 사고와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다. 같은 사회, 동시대를 살면서도 신세대 청소년은 서로 간의 동질성보다는 개인주의를 옹호하고, 집단주의나 획일주의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압력, 통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신세대 청소년이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데에 적응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학생과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며 청소년론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을 '학생'의 신분에서 풀어내어 '청소년'이라는 전인적인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거나 '학생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적 현실에서 볼 때, 학생들은 전인적인 존재로 간주하기보다 보호, 통제, 억압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다수는 점수를 따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기계와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유보한 채, 시험성적을 올리기에 급급하게 되어 점수와 석차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또한 애당초 대학 입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다. 교육 주체이면서 피교육자, 약자, 지시를 따라야 할 자 등으로 인식되고 교육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학생에 대한 시각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좀더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이거나 어른이나 기성 세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권리 제한과 박탈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생 신분보다는 청소년으로서 인식하게 될 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다수가 학생이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으로 인식하며, 청소년기 발달상 저항의식이 강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린 아이로,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오랜 동안 기성세대의 강한 우산 아래 보호받아온 세대로서, 어른들이 제시한 행동지침이나 권고에 순응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른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청소년을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하면 희망과 꿈의 세대로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에는 독자성이 부족한 존재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라고 주장하면서도, 교육과 훈육의 객체로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청소년 집단의 강한 저항을 유발하게 된다. 왜냐하면 요즘의 신세대 청소년은 성인의 간섭과 압력에 대해 매우 저항적이며,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욕구가 보다 강하며,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3절 인권의 개념과 의의

전통적으로 인권의 개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를 인권으로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이면 당연히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리이다. 그런데 인간은 원시적인 자연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적이고 당연한 권리로만 인권을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이며, 제도권 내에서의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생존 차원의 기본적인 유지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율성을 지닌 인간, 인간 주체성을 보

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 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란 권리 보유자와 권리 준수자 간의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권리 준수자의 입장에서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의무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권리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허용이며, 행동하고 존재하고 즐기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며, 동시에 권리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4절 청소년 인권의 내용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목록에는 수세기 동안 서구와 아시아 사회 모두에서 추구해 온 수많은 가치들이 들어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사상을 강조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고 집단의 유지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바, 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권 내용이나 대상 관련하여 볼 때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나, 선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체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내용이 존재하며, 인권 나름대로 강도의 서열이 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울 권리는 약한 권리인 반면,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는 상대적으로 강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누가 보아도 너무도 자명한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 평등권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면 그 국가는 반인권 국가로 지목받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에는 이 외에도 복지권이나 문화권, 사회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권리 준수자에게 상당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자유권이나 생명권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복지권이나 사회권, 문화권을 전적으로 경시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만약 사회가 복지권 등의 자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을 때 복지권의 주장은 매우 현실성이 없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의 내용에 대해 문용린 등(2002)은 세계 인권선언과 유네스코의 인권교육 내용 분류를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의 내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으로 분류했다.

<표 1-1> 인권의 내용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1. 평등권 2. 생명권 3. 노예제도와 강제노동 금지 4. 고문 금지 5. 법 앞에 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6. 법 앞의 평등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신체와 자유와 안전의 권리 9. 사생활 보호권 10. 이주의 자유와 망명할 권리 11. 국적에 대한 권리 12.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이룰 권리 13. 재산을 소유할 권리 1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 의견과 표현의 자유 16. 집회와 결사의 자유 17. 공무에 참여할 자유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3. 일할 권리 4. 정당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건강과 안전, 휴식,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5.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6.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7.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8. 정보에 대한 권리 9. 발전에 대한 권리 10. 균형 잡힌 환경에 대한 권리 11. 인류공동 유산을 포함하는 자연 및 문화 유산에 대한 권리와 접근의 자유

이러한 인권의 내용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권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왔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우리나라 정부가 1991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한 이후이다.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나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인권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컸던 반면, 발달권과 참여권은 소홀히 취급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견해를 표명하며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권리를 성인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능동적 권리의 소유자 내지 행사자로 인식하며,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조약에서는 아동은 자신의 자유권과 행복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이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아동권리 협약에 준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내용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1. 아동의 생명권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사형 고문의 금지 및 적절한 취급을 받을 권리 2. 아동의 신체적 자유권 자유박탈 아동의 구조접근 권리 사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3. 아동의 정신적 자유권 아동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권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1. 기초 보건과 복지 권리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받을 권리 건강과 의료지원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양육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권리 적합한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 ·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인격과 능력이 존중받을 권리 여가 오락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3. 특별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난민 아동 및 소수자의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의 고유문화를 향유할 권리 분쟁지역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약취유인이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가족환경과 대체적 보호를 받을 권리 생명권 및 국적 취득권 신분을 보존할 권리 부모로부터 분리금지 권리 가족 없는 아동의 양호와 원조 받을 권리

이 협약에서는 인권의 일부로 간주되는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을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명권, 신분 보존권,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를 비롯하여 가족 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 아동의 보호, 문화활동권 등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인권 가운데 학생 인권의 내용을 분류하여 특화시킨 학자도 있다. 심성보 등(2002)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자치권, 사생활 보호, 적법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기타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하나는 교육받을 권리로 차별 없는 기회제공권, 교육환경의 정비 요구권,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내용의 선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이 외에도 이수광(2002)은 학생 인권을 자유권과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이수광의 분류는 분명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청소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소외 청소년의 인권 보장 사태 등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점에 청소년 인권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표 1-3> 학생 인권의 내용

자 유 권	복 지 권	사회적 지위권
1. 선택의 자유	1. 신체보존권	1. 교육받을 권리
2. 인간관계 참여의 자유	-자신의 신체 및 정상적 정신 상태를 보존할 권리	2.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3. 사생활의 자유	2. 최소 목적 행위	3. 사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종교의 자유	-자신의 능력 발현과 여건 마련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4. 적법 절차를 보호받을 권리
5. 양심 표현의 자유	3. 목적 증가 권리	5.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스스로의 능력 개발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	6. 기타 보호받아야 할 권리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권의 내용 외에도 외국의 아동인권센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인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인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기준은 아동 권리 국제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원칙 즉, 최선의 이익 원칙, 의견 존중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 4대 원칙이다.

첫째, 최선의 원칙이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아동 및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둘째, 의견 존중의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미한다. 셋째,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차별 금지의 원칙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한 지는 겨우 4-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의 침해 실상이나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파악할 만한 경험적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보완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

제1절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92만 5천명(장래인구추계 결과)이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2,412만 6천명, 여자 2,379만 9천명으로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의 비율인 성비는 101.4로 나타났다.

<표 2-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90	2000	2003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7,925
0-14세	12,951	10,973	9,911	9,719
15-64세	23,717	29,701	33,702	34,238
65세+	1,456	2,195	3,395	3,96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1.1	20.3
15-64세	62.2	69.3	71.7	71.4
65세+	3.8	5.1	7.2	8.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01).

전체 인구 중에서 0-14세의 유년인구 비율은 20.3%,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1.4%, 65세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8.3%이며,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14세이하 유년부양비는 28.4%, 65세이상 노년부양비는 11.6%이며 총부양비는 40.0%로 나타났다.

<표 2-2> 청소년 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청소년 인구					구성비				
	계	9-13	14-17	18-19	20-24	계	9-13	14-17	18-19	20-24
2000	11,501	3,169	2,802	1,676	3,854	100.0	27.6	24.4	14.6	33.5
2001	11,421	3,250	2,635	1,604	3,931	100.0	28.5	23.1	14.0	34.4
2002	11,378	3,346	2,524	1,496	4,012	100.0	29.4	22.2	13.2	35.3
2003	11,330	3,436	2,471	1,382	4,040	100.0	30.3	21.8	12.2	35.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01).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1,330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절대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9-13세 30.3%, 14-17세가 21.8%, 18-19세 12.2%, 20-24세는 35.7%로, 청소년 인구 중 9-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4.3%이다.

2003년의 학령 인구는 10,960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의 31.2%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이다. 전체 학령 인구 중 초등학생은 38.3%, 중학생이 17.6%, 고등학생이 16.9%, 대학생이 27.2%를 차지하고 있다. 성비를 보면, 초등학생은 여학생 100명당 113.7명이고, 중학생은 113.7명으로 1990년의 107.1명, 107명에 비해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표 2-3> 학교 구분별 학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여자 100명당 %)

	1980	1990	2000	2003
학령인구(6-21세)	14,401	13,361	11,383	10,960
(총 인 구 대 비)	(37.8)	(31.2)	(24.2)	(22.9)
초등학교 (6-11세)	5,499	4,786	4,073	4,196
중 학 교 (12-14세)	2,599	2,317	1,869	1,924
고등학교 (15-17세)	2,671	2,595	2,166	1,855
대 학 교 (18-21세)	3,632	3,663	3,275	2,984
성 비				
학령인구(6-21세)	107.5	106.8	109.9	111.5
초등학교 (6-11세)	107.8	107.1	114.0	113.7
중 학 교 (12-14세)	107.1	107.0	110.4	113.7
고등학교 (15-17세)	107.8	106.5	108.3	110.3
대 학 교 (18-21세)	107.1	106.4	105.8	108.0
대학입학 대상자 (18세 기준)	923	920	827	6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01).

제2절 청소년의 정신건강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 논할 때, 먼저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경우 행복은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속성이나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삶이라고 정의된다. 바람직한 외적 기준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신분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로부터 미덕이나 신선함과 같은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를 중시하여 고려할 때에는 행복을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한 개인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은 한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평가될 수도 있는데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요즘의 청소년은 과거 절대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청소년에 비해 더 행복해야 당연하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주저되는 점은 요즘 청소년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버겁고, 그 짐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무언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극복하고 그들의 욕구를 유보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목표 달성만 하면 된다는 도구주의적 성향의 사람들과 요행을 바라는 무사안일한 사람들의 행태는 우리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경제 성장을 일차적으로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온 바, 개인의 삶의 질보다는 우리 사회의 부와 국가 우선주의에 밀려 개인의 복지는 뒷전에 밀려나게 되었고 아직 여러 면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배움의 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은 더더욱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과연 청소년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청소년들은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학교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존재는 그다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이 악용되어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 등은 어떤지, 이들의 여가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

1) 스트레스 경험률

청소년기에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전화조사(2003)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급별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다. 공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와 '심하다'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4.8%, 중학생은 19.4%, 고등학생은 31.4%였다. 여학생은 남자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공부 스트레스는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4>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심함	심한 편	보통	별로 없는 편	전혀 없음	계 (명)
전체	3.4	14.8	44.5	31.4	5.8	100.0(1,015)
성별						
남	3.4	12.7	44.9	32.8	6.2	100.0(497)
여	3.5	16.8	44.2	30.1	5.4	100.0(518)
교급별						
초	1.4	3.4	42.0	41.7	11.5	100.0(348)
중	4.3	15.1	47.2	29.3	4.1	100.0(345)
고	4.7	26.7	44.4	22.7	1.6	100.0(322)
지역별						
대도시	4.4	14.9	44.9	28.9	6.9	100.0(363)
중・소도시	2.8	14.3	44.2	32.1	6.6	100.0(468)
읍・면	3.3	15.8	44.6	34.8	1.6	100.0(184)

자료 : 아동의 학교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화조사(2003).
출처 : 서문희 외(2003).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청소년은 5.6%이고 많이 느낀다는 청소년은 28.2%로 약 1/3 정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2-14세보다 15-19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했다.

<표 2-5>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12-19세)

(단위 : %, 명)

구 분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	계(수)
전 체		5.61	28.20	51.97	14.22	100.0(1,244)
성	남자	4.35	25.84	51.45	18.36	100.0(633)
	여자	6.90	30.61	52.50	9.99	100.0(611)
연령	12-14세	4.46	23.64	53.32	18.58	100.0(481)
	15-19세	6.33	31.04	51.12	11.51	100.0(763)

자료 : 보건복지부(2002).

2003년에 실시된 또다른 조사(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3) 결과에 의하면, 부모 때문에 매우 또는 대체로 힘들고 짜증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41.9%이며, 중학생은 37.2%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약간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부모 때문에 힘들고 짜증난다는 반응은 일반계, 실업계에 따른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반면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스트레스는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업성적이 보통이하인 학생은 부모 때문에 힘들다는 비율이 48.7%로,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37.1%보다 더 많았다.

학업생활에 관한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학교성적 때문에 매우 또는 대체로 힘들고 짜증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78.4%이며, 중학생은 76.8%이고, 선생님 때문에 매우 또는 대체로 힘들고 짜증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41.1%, 중학생은 36.0%이다.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짜증난다는 반응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39.7%, 실업계 고등학생의 46.5%로 계열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원 다니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힘들고 짜증난다는 중학생은 42.3%이고, 고등학생은 23.6%으로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낮은 이유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구 때문에 매우 또는 대체로 힘들고 짜증난다는 고등학생은 17.1%이며, 중학생은 20.6%이다. 또래로 인한 고민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이 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등학생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매우 또는 힘들고 짜증난다는 고등학생은 60.1%이며, 중학생은 45.2%로 고등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은 중학교 때 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고등학교 시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대한 고민과 또래발달을 중시하고,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위 조사결과도 이와 매우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교사의 수업진행 능력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 청소년을 이해하는 지도자의 태도와 마음이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2000년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경험률과 스트레스 결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를 100점으로 할 때 60점이상인 문항은 8문항으로, 자신의 장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69.5점), 그 다음은 진학문제, 교사의 체벌, 틀에 박힌 학교생활, 자신의 성격 중 산만하고 잡념이 많은 것, 교사의 태도 중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지나친 꾸지람, 친한 친구와의 다툼 등이었다. 이 외에도 부모의 과잉기대, 자신과 타인과 비교하는 부모의 태도, 학교성적, 자신의 실천력 부족, 교사의 교수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한 친구와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래 진로나, 진학, 교사의 태도 등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특히 작은 키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60.8점으로 남학생의 45.2점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한편, 교급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극히 적은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학생(61.1점)이 고등학생(54.9점)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신의 장래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생(72.7점)이 중학생(64.2점)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가정생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의 단조로움, 또래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2-6> 스트레스 점수표

(단위 : %)

	전체	남	여	중	고
부모문제	44.3	43.3	45.2	42.4	45.1
부모자녀간 갈등	42.9	43.3	42.4	42.6	43.0
가정경제문제	35.1	32.0	**38.3**	29.6	**37.4**
친구관계	43.4	41.3	45.4	44.2	42.8
이성친구	46.2	45.4	46.7	45.7	46.5
교사관계	**56.8**	54.0	**59.5**	57.4	56.3
성적/학교생활	**55.7**	53.9	**57.4**	53.8	56.5
학교환경의 유해성 (불량학생/서클)	36.4	36.9	35.6	**40.1**	33.5
타인의 인정/자기표현	48.6	45.5	**52.1**	48.4	48.7
개인적 고민	**54.7**	53.5	55.9	51.9	**56.3**
부모의 행동통제	42.3	41.1	43.5	**46.3**	39.6
건강/외모의 문제	44.5	40.5	**47.8**	43.7	44.9

출처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a).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영역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간의 관계를 조사한 바, 부모가 문제행동을 하거나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 친구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청소년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거나 가출, 결석 등 비행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실업계 여학생이나 남자 중학생 집단, 비친부모 가정에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비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을 내거나 무기력해지고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와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고민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나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외모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학생은 신경과민이나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하는 비율이 많았다.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증적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어울리거나 노래방 등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써클이나 폭력 피해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출이나 음주, 흡연, 결석 등 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이거나 비친부모 가정의 경우, 직면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에 대해 무기력해 하거나 고민하는 등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회피하거나 원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거나 왜곡되게 표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7> 스트레스 영역에 따른 대처행동

	신경증적 행동	해소행동	비행조짐	비행	순응(체념)
부모행동(부부관계 포함)	0.1719**			**0.2121****	
부모자녀간 갈등	**0.2599****	0.1521**	0.1562**		
가정경제문제	0.1659**	0.1503**	0.1054**	**0.2042****	0.1164**
친구관계	**0.2445****			**0.2265****	
이성친구관계	0.1970**	0.1555**		0.1806**	
교사와의 관계	**0.3365****	0.1852**		0.1914**	
성적/학교생활	**0.3595****	**0.2206****	0.1217**	0.1662**	
불량학생/ 서클	0.1472**			**0.2750****	0.1142**
타인의 인정/자기표현	**0.4141****		0.1586**	0.1544**	
개인적 고민	**0.4658****		0.1799**	0.1561**	
부모의 행동통제	**0.2078****		0.1875**	**0.3360****	0.1303**
건강/외모의 문제	**0.2418****			0.1940**	

** p<0.001.
출처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a).

2. 고민과 걱정거리

황창순 등(1999)은 서울과 안산, 성남 일대의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사대상 청소년이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공부・학업성적(59.5%)이고, 그 다음으로는 진학・취업(34.0%)이며 성격(29.0%), 외모(2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저소득층 청소년은 '용돈 부족'(7.9%), '가족'(7.7%), '경제적 어려움'(7.7%)등을 꼽았으며, 일반 청소년은 '고민이 없다'(6.3%), '이성교제'(5.9%), '용돈'(5.2%)과 '건강 부

족'(5.2%)순으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공부・학업성적', '진학・취업'에서는 일반 청소년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용돈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항목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단위 : %)

항 목	저소득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 체
공부・학업성적	57.4	61.4	59.5
진학・취업	33.0	35.0	34.0
성격	23.9	33.6	29.0
외모	29.4	23.3	26.2
용돈부족	20.8	13.5	16.9
가족	20.3	10.3	15.0
건강	14.2	13.5	13.8
이성교제	11.2	15.2	13.3
경제적 어려움	20.3	3.1	11.2
학교	9.6	9.0	9.3
동성친구	3.0	9.9	6.7
성(sex)문제	4.1	4.0	4.0
기타	2.5	6.3	4.5
없다	13.2	16.1	14.8
전 체	46.9(197)	53.1(223)	100.0(420)

출처 : 황창순 외(1999).

청소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저소득층 청소년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과 '가정 불화', '성적이 안 좋은 것'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외에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부담감', '친구들의 수군거림' 등의 응답이 나왔다. '희망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IMF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은 학원에 다니고 싶다', '아버지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나왔다.

대부분 저소득층 청소년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불화 등에 대해 힘들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성적', '여가', '용돈', '교육방식' 등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주요 고민과 희망 사항과는 차이를 보였다.

3. 우울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다수의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우울은 자살, 흡연, 알콜 또는 약물남용 등을 유발하며 우울증에서 회복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의 결함, 전반적인 생활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성장한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인생의 의미, 일하는 목적이라든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세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다소 비현실적인 걱정도 하면서 늘 소외, 분리, 무기력, 부조리와 같은 감정과 싸우게 된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서 받았던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아동기를 그리워하거나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불안정성에 의해 나타나는 10대 개인의 구체적인 걱정은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인 사람은 자기 자신 내부에 매우 큰 분노가 숨겨져 있어 주위의 작은 모욕이나 상처에도 쉽게 흥분하고 몹시 화를 낸다.

<표 2-9> 지난 1년간 우울 인식도(12-19세)

(단위 : %)

	구분	계(N)	항상 느낌	가끔 느낌	거의 안느낌	전혀 안느낌
전체	전체	100.0(1,243)	6.23	49.92	30.68	13.17
성	남자	100.0(632)	3.29	44.20	36.94	15.57
	여자	100.0(611)	9.24	55.76	24.28	10.72
연령	12-14세	100.0(482)	3.54	41.50	36.16	18.80
	15-19세	100.0(762)	7.91	55.18	27.25	9.66
지역	동	100.0(1,043)	5.63	49.82	31.00	13.55
	읍면	100.0(200)	9.45	50.44	28.93	11.18

자료 : 보건복지부(2002).
출처 : 서문희 외(2003).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지난 1년간의 우울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14세보다 15-19세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감을 항상 느끼는 비율은 12-14세의 3.5%, 15-19세의 7.9%였다. 또한 우울감은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한국아동학회가 2002년에 발간한 아동발달백서에 의하면, 중학생(38.3%)보다 고등학생의 우울감이 47.3%로 높았다. 매일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중학생 10.4%, 고등학생 12.4%로 나타나 교급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2-10> 청소년의 현재의 우울 정도

(단위 : 명,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총계
매우 그러함	88 (7.4)	199 (12.7)	287 (10.4)	114 (10.3)	152 (14.6)	266 (12.4)	208 (8.9)	359 (13.4)	567 (11.3)
그런 편	264 (22.4)	505 (32.1)	769 (27.9)	325 (29.3)	425 (40.9)	750 (34.9)	603 (25.7)	948 (35.5)	1,551 (30.9)
그렇지 않음	483 (40.8)	592 (37.2)	1,075 (39.0)	467 (42.1)	373 (35.9)	840 (39.1)	973 (41.4)	984 (36.9)	1,957 (39.0)
매우 아님	348 (29.4)	275 (17.5)	623 (22.6)	203 (18.3)	90 (8.7)	293 (13.6)	566 (24.1)	379 (14.2)	945 (18.8)
계	1,183 (100.0)	1,571 (100.0)	2,754 (100.0)	1,109 (100.0)	1,040 (100.0)	2,149 (100.0)	2,350 (100.0)	2,670 (100.0)	5,020 (100.0)

자료 : 한국아동학회, 아동발달백서(2002).

4. 자살

자살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개개인 성격과 유전적, 심리적 특성, 환경, 정신병리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 혼란, 성적 욕구, 충동조절 등 발달적 특징 때문에 자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고 한다. 스트레스, 자기불신, 염세주의, 슬픔, 절망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정신세계에 있어서 자살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이기 쉽다. 특히, 문제에 대한 대처기술이 부족한 경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자살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래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될 때나 인터넷 자살 사이트 접속을 통해 충동적으로 죽음을 택하려는 10대들을 유혹하고 있어 쉽게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 대부분이 절망감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하지만 일부는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무언가 죽음 이후의 편안한 세상을 그리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종합 일간지에 나타난 청소년 자살자 137사례에 대한 동기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61.6%와 여자 청소년의 66.6%는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서적 문제(남 25.0%, 여 9.2%), 비관(남 6.9%, 여 18.5%)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원기(2002)는 한국 청소년 가운데 대입, 경쟁 등 공부 압력과 가족내 갈등, 친구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고 여기에 개인적인 충동성이 높거나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경우에 자살을 하기 쉽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지난 1년간의 자살 생각을 해보았는지를 조사한 바, 12-14세(19.0%)보다 15-19세(26.4%)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며, 남자(18.5%)보다 여자(28.8%)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은 자살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자살 시도의 중요한 예측 지표로 간주되어 왔고 경험적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11>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12-19세)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N	%	N	%	N	%
전체		1,244	23.58	633	18.49	611	28.78
연령	12-14세	480	19.00	248	15.73	232	22.34
	15-19세	764	26.42	385	20.20	379	32.79
지역	동	1,043	23.54	534	18.64	509	28.69
	읍・면	201	23.79	99	17.61	102	29.19

자료 : 보건복지부(2002).

1998년과 2002년 병원 응급실에 접수된 자살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이홍식, 2003)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은 우울증,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자살시도의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환자의 약 87%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문제가 있고, 전체의 66%는 우울증이며, 약 60%는 평소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약 25%는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실을 방문한 청소년 자살 환자 중에서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에 동의한 청소년은 22%에 불과해 자살 시도 청소년 중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나 부모가 정신과 치료에 대한 주위의 편견을 우려해 치료를 꺼리고 자살시도나 정신병리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의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WHO의 국가별 자살통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는 최근 보고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자살률을 비교해볼 때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자살로 죽은 사람이 8,600여명으로 교통사고사를 앞질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4위라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여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표 2-12> 1997년의 WHO 국가별 자살통계

(단위 : 인구 십만 명당, 명)

국가	성별	총계	5-14세	15-24세	25-74세 (평균)	75세 이상
한국	남	17.8	0.9	12.5	28.72	66.8
	여	8.0	1.1	8.0	10.22	26.7
일본	남	26.0	0.5	11.3	33.48	52.6
	여	11.9	0.3	5.5	13.46	33.2
미국	남	18.7	1.2	18.9	23.76	44.7
	여	4.4	0.4	3.5	6.86	5.1

출처 : 최원기 외(2002).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조짐은 연령별 사망원인 통계치를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 극명하게 확인된다.

1990년도의 경우 10대 청소년 사망 관련 3대 원인에 자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1999년에는 사망원인 중 2번째, 2001년에는 3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2001년)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구분		0세	1-9세	10-19세	인구전체
1위	원인 사망률	주산기질환 292.1	운수사고 7.8	운수사고 9.4	악성신생물 123.5
2위	원인 사망률	선천성기형 115.4	악성신생물 3.4	악성신생물 4.3	뇌혈관질환 73.8
3위	원인 사망률	영아급사증후군 15.3	익수사고 3.0	**자살** **3.3**	심장질환 34.2
4위	원인 사망률	심장질환 5.8	선천성기형 2.1	익수사고 2.2	당뇨병 23.8
5위	원인 사망률	기타급성하기도감염 4.6	추락사고 1.8	심장질환 1.2	간질환 22.3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2002).

자살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이를 감정의 기복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청소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지 않도록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능력 개발과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또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속감과 또래간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친구나 가족,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과 관여가 부족하며,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은 결국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은 공부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상당한 불만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놀 권리를 얼마나 향유하는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여가활용 시간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보고서(1999)에 나타난 일상시간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하루 24시간의 43%인 10시간 18분은 수면, 식사, 세면 등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4시간 24분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실태는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 하루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중학생은 평균 8시간 53분을 학습관련 활동에 보내고 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인의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평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초등학생 4시간 2분에서 중학생 3시간 15분, 고등학생은 2시간 38분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조성남・이동원의 실태조사(2002)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 외 놀이시간이 평균 2.2시간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순응형 학생은 1.7시간, 중간 집단은 2.3시간, 노는 것에 익숙하고 저항적인 집단은 3.9시간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났다.

2. 여가활용 방법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5-19세 청소년은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으로 TV시청을 하는 비율이 65.1%로 여전히 많으며 사이버 세대라는 호칭에 걸맞게 PC관련(46.4%) 활동이 점차 증가하며, 사교관련(46.4%) 활동과 휴식, 수면(41.3%)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여가활용 방법(복수응답)

(단위 : %)

	계	감상 관람	TV 시청	PC 관련	승부 놀이	창작적 취미	스포츠	여행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 잡일	휴식, 수면	기타
15세 이상	100.0	10.1	62.7	**12.5**	3.4	3.2	8.0	15.1	32.3	**22.8**	**33.5**	50.7	3.7
15-19세	100.0	18.4	65.1	**46.4**	2.0	5.6	12.3	3.8	**46.4**	8.7	5.7	**41.3**	3.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0).

조성남・이동원의 조사결과(2002)에 의하면 청소년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화로 75.2%이며, 노래방 50.4%, PC방 37.7%, 전자오락실 23.7%, 쇼핑 32.3%, 운동 23.3% 등을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놀이문화 (중복응답)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성별		또래집단 유형		
		남	여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대화(수다)를 많이 한다	75.2	57.6	92.3	85.2	74.5	60.4
노래방	50.4	42.7	57.9	44.3	51.7	43.8
비디오방	0.8	0.8	0.8	0	0.9	2.1
만화방	4.2	4.5	3.8	4.3	3.8	6.3
당구장	12.0	21.9	2.5	7.0	11.7	29.2
PC방	37.7	60.7	15.3	27.8	38.3	60.4
전자오락실	23.7	27.8	19.7	27.8	23.1	22.9
영화/연극/콘서트	18.3	8.4	27.9	22.6	18.6	2.1
나이트클럽/록카페/술집	6.1	7.0	5.2	1.7	4.6	35.4
쇼 핑	32.3	7.6	56.3	38.3	32.6	16.7
놀이공원	3.6	2.0	5.2	5.2	3.3	2.1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회	0.3	0.3	0.3	0.9	0.6	0
운 동	23.3	46.1	1.1	22.6	24.2	10.4
기타(무응답 포함)	2.4	2.2	2.5	2.6	2.2	4.2
N	100(722)	100(356)	100(366)	100(115)	100(549)	100(48)

출처 : 조성남 외(2002).

이러한 청소년의 놀이문화는 또래집단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화를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많고, 영화나 연극을 본다는 비율 역시 많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PC방이나 당구장에 가는 비율과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많았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순응형 학생은 학교외 생활에 관심이 더 많고 놀이문화에 빠져있는 저항형 학생보다 친구간에 대화를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학생이 많고, 저항형 학생은 당구장이나 PC방에 간다거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간다는 학생이 많고, 중간 정도의 학생은 순응형 학생의 놀이문화와 유사한 편이다.

3.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의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활동에 대해 51.5%가 만족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39.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윤철경 외, 2001) 결과에 의하면, 여가・문화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청소년은 17.7%, 만족한다는 32.0%로 49.7%가 만족한다고 한 반면, 불만스럽다는 반응은 14.0%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도시에 거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5점 기준 남학생이 3.39점이고 여학생은 3.17점으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3-15세가 3.45점, 16-18세가 3.11점으로 학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활용 시간이 여유있는 13-15세 청소년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6>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 불만	무응답	전체
99(9.7)	300(29.4)	443(43.4)	153(15.0)	19(1.9)	7(0.7)	1021(100.0)

출처 : 윤철경 외(2000),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2001)에 의하면,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학생(13.4%)보다 불만스럽다는 학생(39.9%)이 더 많았다. 이들은 여가활동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시간 부족과 비용 부담을 꼽았으며, 이 외에도 적절한 장소와 시설의 부재를 들었다.

<표 2-17> 여가·취미생활의 장애 요인

(단위 : 명, %)

구분	시간 부족	비용 부담	함께 할 사람 부재	적절한 장소와 시설 부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2000	34.9	**39.5**	4.4	10.3	5.3	2.7
2001	**41.6**	29.9	2.5	6.1	1.3	4.6

출처 : 조은 외(2000), 이혜연 외(2001).

4. 희망하는 여가활동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웅(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컴퓨터 통신이나 게임이 2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체육활동 18.2%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휴식 또는 수면을 20.5%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조차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는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 41.7%가 여행을 꼽았고, 아르바이트 24.4%,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 20.1%, 스포츠 활동 17.8%, 등산 및 낚시 등 야외활동 17.3% 순으로 나타났다(조은 외, 2000). 2001년에 시행된 연구(이혜연 외, 2001)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캠프나 동아리 활동, 사회교육 분야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이용률보다 희망률이 2-3배 이상 높고, 희망하는 비율은 각 유형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희망률은 교급별로 차이를 보여 중학생의 여가활동 희망률은 고등학생보다 높으며, 중학생은 캠프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바라는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8>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 이용률과 희망률

(단위 : %)

		현재 이용률	희망률
사회교육 (컴퓨터・수영・피아노)	중학교	16.1	40.1
	일반고교	8.4	31.9
	실업고교	12.2	37.4
	전체	14.4	38.5
동아리 활동별	중학교	11.5	38.0
	일반고교	24.4	24.4
	실업고교	16.5	22.6
	전체	14.1	33.8
청소년캠프	중학교	11.5	40.8
	일반고교	7.6	25.2
	실업고교	13.0	27.0
	전체	11.1	36.5

출처 : 이혜연 외(2001).

5. 문화생활 경험률

앞서 살펴본 바,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과는 달리 경험률도 낮은 편이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미흡한 편이다.

아동발달백서에 제시된 중·고등학생의 문화활동 유형별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경험한 적이 있는 문화활동은 영화이며, 전시회, 음악회 순으로 나타났다. 연극이나 운동경기를 관람한 비율은 다른 문화활동에 비해 경험률이 낮았다. 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음악회와 영화를 보았다는 경험률이 높다는 점이다.

<표 2-19> 1년간 문화생활 경험률

(단위 : %,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공연 (응답자수)	14.7 (1,185)	30.6 (1,577)	23.8 (2,762)	13.0 (1,107)	27.0 (1,033)	19.8 (2,140)	13.9 (2,292)	29.2 (2,610)	20.0 (4,902)
운동경기 (응답자수)	24.9 (1,184)	8.8 (1,575)	15.7 (2,758)	21.9 (1.104)	8.6 (1,033)	15.5 (2,137)	23.5 (2,288)	8.7 (2,608)	15.6 (4,896)
연극 (응답자수)	18.0 (1,064)	20.8 (1,391)	19.6 (2,455)	16.5 (984)	19.3 (890)	17.8 (1,874)	17.2 (2,048)	20.2 (2,281)	18.8 (4,329)
음악회 (응답자수)	22.0 (1,062)	36.2 (1,406)	27.3 (2,468)	33.0 (993)	38.2 (906)	35.5 (1,899)	27.3 (2,055)	34.0 (2,312)	30.8 (4,367)
전시회 (응답자수)	32.6 (1,074)	40.9 (1,404)	37.3 (2,478)	29.3 (990)	35.0 (902)	32.0 (1,892)	31.0 (2,064)	38.6 (2,306)	34.8 (4,370)
영화 (응답자수)	58.1 (1,120)	67.8 (1,461)	63.6 (2,581)	76.9 (1,060)	79.6 (978)	78.2 (2,038)	67.2 (2,180)	72.5 (2,493)	70.0 (4,619)

자료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아동발달백서(2001), 재구성.

통계청의 2000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5-19세 인구의 문화 예술 및 경기장 시설 이용률은 68.5%로 전체 인구 이용률보다 월등히 높다. 1996년 실태와 비교해 볼 때, 영화나 음악회, 연극 공연장 입장 경험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체육관 입장 경험률과 전시장 입장 경험률은 감소하였다.

<표 2-20> 문화 예술 및 경기장 시설 이용률

(단위 : %)

구분		전체 입장률	공연장 입장률					전시장 입장률			체육시설 입장률
			소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	무용	영화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1996	전체	44.4	33.5	11.2	8.8	1.2	27.2	16.0	10.8	9.2	17.0
	15-19세	72.0	61.8	21.5	12.2	2.5	53.8	24.9	15.2	16.9	24.4
2000	전체	39.9	32.6	9.7	7.3	0.9	26.6	11.7	8.5	6.3	9.5
	15-19세	68.5	62.3	20.3	9.1	2.0	55.0	19.1	13.2	12.0	12.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0).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은 지역의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공간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으로 '시설·공간의 부족'(33.5%)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참가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의 부족'(24.8%),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16.4%)순으로 응답하였다.

시설 이용상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이용할 시간 부족(36.1%)이며, 문화시설 공간에 대한 정보 부족(29.1%)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16.2%)는 것을 들었다.

<표 2-21>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역 내 문화시설·공간이용시 문제점

(단위 : %)

구분		시설, 공간 부족	시설, 공간의 환경 열악	시설, 공간 활용 부족	좋은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	기타	전체
성별	남자	37.6	9.9	8.8	24.9	9.9.	8.8	100.0
	여자	29.8	8.6	12.1	24.7	22.2	2.5	100.0
전체		33.5	9.2	10.6	24.8	16.4	5.5	100.0

출처 : 이혜연 외(2001).

청소년의 문화활동 중에서 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량'은 참고서와 만화를 제외한 것으로, 한국출판연구소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한 학기 동안 중·고등학생의 9% 정도는 전혀 독서를 하지 않았으며, 평균 독서량은 지난 6개월간 초등학생 23.3권, 중학생 9.6권, 고등학생 7.1건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3).

이 자료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커갈수록 일반 도서 독서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컴퓨터 세대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책 읽는 것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통계청의 정보화 실태조사 결

과(2002)에 의하면, 10-14세의 93.4%, 15-19세의 93.7%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중학생의 69.1%와 고등학생의 62.7%가 주당 7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생활시간 중 인터넷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 독서 시간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일반 도서의 독서량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잡힌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표 2-22> 한학기 일반도서 독서량

(단위 : %, 권수)

구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혀 읽지 않음	6.1	0.2	9.0	9.1
1-2권	22.0	12.5	23.1	30.5
3-4권	15.9	12.1	17.8	17.8
5-10권	25.6	24.5	27.0	25.4
11-20권	13.4	18.3	12.1	9.8
21-50권	12.7	21.8	9.3	6.9
51권 이상	4.3	10.6	1.7	0.5
전체 평균	13.3	23.3	9.6	7.1
독서자 평균	14.2	23.3	10.5	7.8
(조사대상수)	(3,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출판연구소, 제6회 국민독서 실태조사(2000).
출처 : 서문희 외(2003).

6. 단체활동 경험률

청소년기에 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는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원만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며, 취미・여가생활과 소질과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단체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기술을 학습하게 되며 리더쉽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는 소속감은 물론, 자율성과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책임과 의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활동의 장이 된다.

윤철경 외(2000)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은 취미・동아리 활동(23.8%)과 종교단체 활동(25.1%)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참여율은 66.2%이고, 여자 청소년은 74.0%로 남·녀간의 차이가 났다. 여자 청소년은 취미 동아리 활동과 종교단체 활동 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3-15세 청소년이 스포츠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많은 반면, 16-18세 청소년들은 취미 동아리 활동, 독서 및 종교단체 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현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단위 : 명, %)

		봉사 단체	청소년 단체	스포츠 동아리	독서 예술 단체	교회등 종교 단체	환경 단체	기타	없다	무응답	전 체
전 체		56(5.5)	21(2.1)	71(7.0)	243(23.8)	31(3.0)	256(25.1)	4(0.4)	34(3.3)	381(37.3)	945(92.6)
성별	남 자	23(4.5)	9(1.8)	60(11.7)	107(20.9)	12(2.3)	111(21.7)	3(0.6)	14(2.7)	194(38.0)	489(95.7)
	여 자	33(6.5)	12(2.4)	11(2.2)	136(26.7)	19(3.7)	145(28.4)	1(0.2)	20(3.9)	187(36.7)	456(89.4)
연령별	13-15	18(3.5)	10(1.9)	43(8.3)	104(20.2)	11(2.1)	136(26.4)	1(0.2)	27(5.2)	193(37.4)	489(948)
	16-18	37(7.4)	11(2.2)	27(5.4)	138(27.6)	20(4.0)	120(24.0)	3(0.6)	7(1.4)	185(37.0)	452(90.4)

출처 : 윤철경 외(2000).

그러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조은 외, 2000),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비율은 불과 7.2%에 불과하고, 과거에 활동해 본 적이 있다는 19.1%, 동아리 가입 및 활동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활동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가 어디 소속인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39.1%), 친구들과의 자발적인 조직(14.5%), 청소년 단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 소속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53.5%로 남학생의 26.9%보다 월등 많으며, 남학생은 친구들과의 자발적인 조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21.0%로 여학생의 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리 활동 참여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표 2-24> 참여 동아리 소속기관

(단위 : %)

구분		학교	청소년 단체	청소년 회관	지역사회 단체, 시설	친구들과 자율조직	기타	전체
성별	남자	26.9	13.4	5.9	1.7	21.0	31.1	100.0
	여자	53.5	11.9	3.0	2.0	6.9	22.8	100.0
전체		39.1	12.7	4.5	1.8	14.5	27.3	100.0

출처 : 조은 외(2000).

동아리(동호회)의 활동 종류는 '문화예술활동', '친목활동', '스포츠활동', '종교활동', '팬클럽활동', '사회봉사활동'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스포츠활동'과 '친목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25> 동아리(동호회)활동 종류

(단위 : %)

구 분		문화예술 활동	사회봉사 활동	스포츠 활동	팬클럽	종교 활동	친목 활동	기타	전체
성별	남자	8.9	7.3	18.5	4.0	8.9	18.5	33.9	100.0
	여자	24.5	12.8	3.2	11.7	12.8	4.3	30.9	100.0
전 체		15.6	9.6	11.9	7.3	10.6	12.4	32.6	100.0

출처 : 조은 외(2000).

7. 사회참여 활동

여러 종류의 사회참여 활동 중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봉사활동으로, 과반수 이상(53.2%)의 청소년들이 평가한 반면, 청소년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은 정책수립활동 11.9%, 경제활동의 참여 11.2%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은 학교에 봉사활동점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강제성을 띄고 참여하게 되어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수립활동, 환경보호활동, 경제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참여가 다른 분야의 참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특징적인 면이 없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서 13-15세 청소년의 경우 정책수립활동에 참여율이 높다고 인식한 사람이 18.6%인데 반해 16-18세는 4.6%에 불과하였고,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16-18세가 13-15세 보다 높으며, 정책 수립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10% 정도,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2-26> 청소년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단위 : 명, %)

		정책수립 활동	경제활동 (취업 등)	환경 보호활동	봉사활동	기타	무응답	전체
전 체		121(11.9)	114(11.2)	59(5.8)	543(53.2)	151(14.8)	33(3.2)	1,021(100.0)
성별	남 자	54(10.6)	65(12.7)	38(7.4)	262(51.3)	74(14.5)	18(3.5)	511(100.0)
	여 자	67(13.1)	49(9.6)	21(4.1)	281(55.1)	77(15.1)	15(2.9)	510(100.0)
연령별	13-15	96(18.6)	58(11.2)	34(6.6)	242(46.9)	71(13.8)	15(2.9)	516(100.0)
	16-18	23(4.6)	56(11.2)	24(4.8)	299(59.8)	80(16.0)	18(3.6)	500(100.0)

출처 : 윤철경 외(2000),

제3장 가정과 청소년 인권

유교적인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하고, 청소년인 자녀도 보호해주어야 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은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환경을 갖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족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하며,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과 국가는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적 가치관의 팽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급속하게 이혼 및 별거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나 별거를 이유로 자녀 양육을 기피하거나, 양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져 가족 내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처럼 대부분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보호받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곧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며, 자녀의 복리문제에 사회적으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해 교육과 보호, 양육의 이름으로 자녀의 체벌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아버지의 학대로 공포에 떨던 초등학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나 아동학대로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등은 학대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준다.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워지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서는 양육의 어려움과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이혼 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폭력 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이혼 가정

서구가 일찍이 경험한 산업화, 도시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이혼 가정의 증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률이 2위이며, 이혼은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다.

2002년 한 해 동안 혼인은 306,573건으로 2001년 320,063건보다 약 13,500건이 감소하였고, 이혼은 2001년 135,014건보다 1만건 정도 늘어난 145,324건으로 이혼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림 3-1> 혼인 및 이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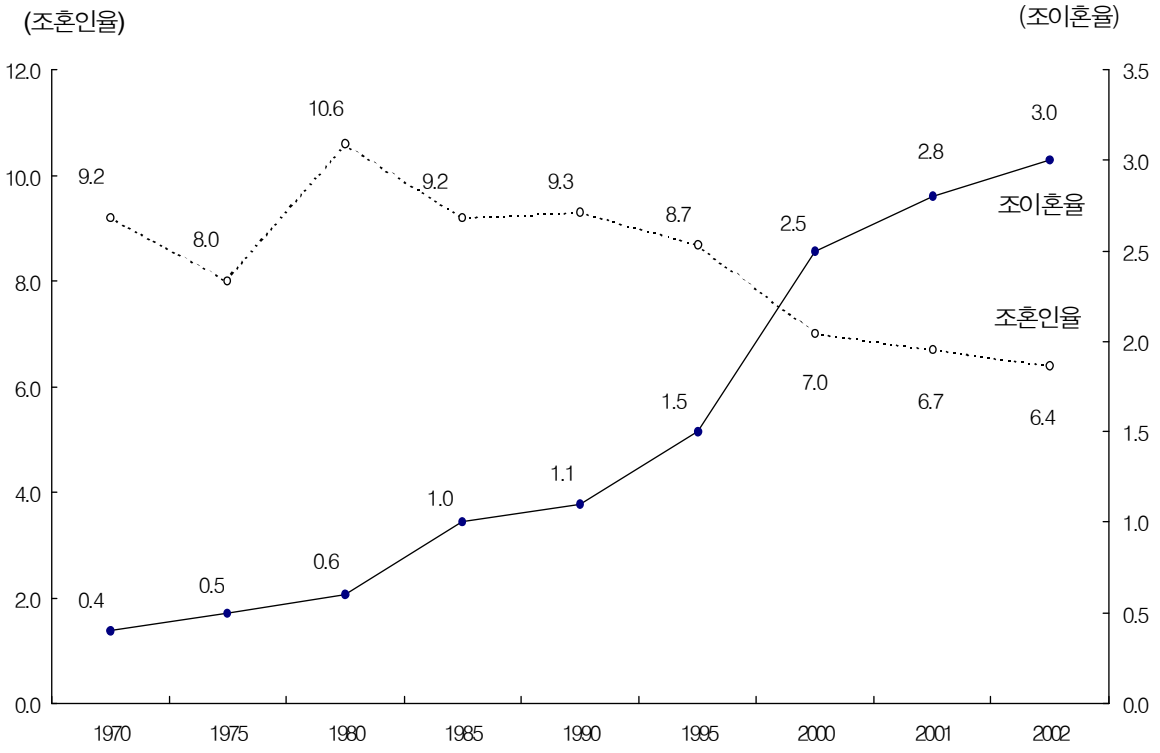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3).

<표 3-1> 혼인 및 이혼 현황

(단위 : 건수, 인구천명당 건)

연 도	혼인건수	조혼인율(‰)[1]	이혼건수	조이혼율(‰)[2]
1970	295,137	9.2	11,615	0.4
1980	403,031	10.6	23,662	0.6
1990	399,312	9.3	45,694	1.1
2000	334,030	7.0	119,982	2.5
2001	320,063	6.7	135,014	2.8
2002	306,573	6.4	145,324	3.0

주 : 1) 조혼인률 = 해당연도 혼인건수 ÷해당연도 총인구 ×1000.
2) 조이혼율 = 해당연도 이혼건수 ÷해당연도 총인구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각년도.

이혼률의 증가는 자녀양육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 이혼의 문제점으로 자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연령층의 이혼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0.2세, 여자 36.7세로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기준으로 부모가 이혼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는 최소한 153,698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에 비하여 약 17,000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이혼한 가정의 약 70%정도는 아직도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2년 이혼건 수 중 동거기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거기간이 0~4년 이하인 경우가 26.9%, 5~9년인 경우가 23.2%, 10~14년인 경우가 19.4%로 나타나 69.5%가 동거 기간이 14년 이하로 나타나 이혼한 부부의 동거기간에서도 자녀양육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 3-2> 이혼연령 변화추세

(단위 : 세)

	1995	1998	1999	2000	2001
남자	38.4	39.8	40.0	40.1	40.2
여자	34.6	36.1	36.4	36.6	36.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

<표 3-3> 이혼시 미성년자녀수별 아동수 및 비율

(단위 : 명, %)

구 분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최소 추정 미성년자수
1999	수	33,932	37,691	41,241	5,150	118,014	135,623
	비율	(28.7)	(32.0)	(34.9)	(4.4)	(100.0)	
2000	수	35,523	38,117	41,079	5,263	119,982	136,064
	비율	(29.6)	(31.8)	(34.2)	(4.4)	(100.0)	
2001	수	37,660	42,193	46,694	6,039	135,014	153,698
	비율	(27.9)	(31.3)	(34.6)	(4.5)	(100.0)	

주 : 미성년자수 추정치는 3명 이상을 3명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2).

이혼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기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게 되는데, 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3년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입소아동은 386명으로 그 중 28%인 109명의 입소사유가 부모 이혼이며, 이는 지난 2000년 10%대에 머물렀던 부모 이혼 입소 아동수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한겨레, 2003년 8월 8일). 이혼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서로 기피하며, 이로 인해 자녀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특히 어머니)는 수입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 곤란과 동시에 자녀의 단독양육에서 오는 이중의 부담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고스란히 자녀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 사회지표(2002)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편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을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6.1%로 1995년 5.7%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3-4> 혼인상태별 편부모와 자녀 가구 수 및 비율

(단위 : 가구 수, %)

	1990	1995	2000
전체	889	960	1,124
유배우	227	216	253
사별	498	526	502
이혼	79	124	246
미혼	85	94	123
편부모 가구 비율	5.8	5.7	6.1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

한부모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지난해 노동부 통계에서도, 여성 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24%에 불과하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3.2% 수준에 그치고 있어(한겨레, 2003년 8월 8일),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근로 및 복지조건이 열악한 직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부 가족에 비해 편모 가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별거 여성의 경우에는 83.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곤란과 함께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혼한 여성이 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데는 시간적, 경제적 또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경우 그 어려움은 가중된다.

현행 민법은 “부모 중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며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혼을 한 후에 부모는 자녀를 면접할 면접교섭권이 있지만, 자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다른 한쪽의 부모를 면접할 면접교섭권이 없어 이혼이 아동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 의하면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 및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을 앞 둔 부모는 이혼을 부부 개인의 문제로 여겨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녀는 심리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부모는 이혼 문제를 자녀들과 공유하여 이혼 시 자녀들의 거취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혼 부모에 대한 면접권을 보장하는 등 자녀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이혼

가정 등 한부모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자녀 보호 문제만큼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부모의 제1차적 책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국가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책임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 보호를 위한 여러 필요조건 중 경제적 안정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1의 요건으로 부모와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제2절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가족이 해체되면서 발생된 가족 중에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소년소녀가정을 들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소년소녀가정은 6,229가구, 2001년에는 5,248가구로 해마다 해당 세대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평균가구원수는 1.54명이다.

<표 3-5>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총세대원			세대주		
	세대원수	증감	변동율	세대주수	증감	변동율
2001	8,060	-1,519	-15.86%	5,248	- 981	-15.75%
2000	9,579	-2,848	-22.92%	6,229	-1,695	-21.39%
1999	12,427	-1,200	- 8.81%	7,924	- 483	- 5.75%
1998	13,627	-2,920	-17.65%	8,407	-1,137	-11.91%
1997	16,547	546	3.41%	9,544	695	7.85%
1996	16,001	883	5.84%	8,849	742	9.15%

자료 : 보건복지부(2002).

2001년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소녀가정의 남녀 인원은 남자가 4,214명이고 여자가 3,846명으로 남자가 더 많다. 연령별로 보면 15~17세가 3,520명으로 가장 많았고, 12~14세가 2,095명, 6~11세가 1,251명, 18~20세가 1,132명, 5세 이하가 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현황별로 보면, 고등학교 재학이 3,4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재학 2,611명, 초등학교 재학 1,640명, 미취학 1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구 중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할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의 비율이 약 21정도%임을 고려할 때,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 3-6> 성별 소년소녀가정 현황(2001)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수		
	계	남	여
합 계	8,060	4,214	3,846

자료 : 보건복지부(2002).

<표 3-7> 연령별 재학현황별 소년소녀가정 현황(2001)

(단위 : 명)

연 령 별						재 학 현 황							
0-5	6-11	12-14	15-17	18-20	21이상	미취학	초등재	중 재	실업고	인문고	기타고	대 재	미재학
62	1,251	2,095	3,520	1,132	-	133	1,640	2,611	2,134	1,239	41	16	246

자료 : 보건복지부(2002).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에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들은 아동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이들 세대에 대하여 생계・교육・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외에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들을 지지해 줄 성인이나 법적인 보호자를 연결해 주는 결연 사업이다. 2000년 현재 소년소녀가정아동은 대상아동 6,395명의 96.7.7%인 6,182명이 결연되어 있다.

<표 3-8>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0년)

결연대상세대	결연세대수	결연율 (%)	후원자수	결연구좌수
6,395	6,182	96.7	17,889	22,859

자료 : 보건복지부(2002).

소년소녀가정 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정 중 하나는 바로 저소득층 가정이다. 빈곤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박탈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은 필수적이다.

전국의 저소득층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혜연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씩 순서대로 선택하게 한 결과, 첫 번째 문제로 24.7%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꼽았으며, '경제곤란'(19.5%), '부모부재'(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곤란'(44.4%)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음주'(10.9%), '부모의 지나친 간섭'(6.3%) 순으로 응답했다. 두 가지 선택한 어려움 들을 합산해 응답 전체 청소년 800명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볼 때, 가정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란'(40.1%)이 가장 많았다. 이로써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이며, 학습지도, 현금 지원, 밑반찬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써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아르바이트 알선으로 41.1%이며, 직업훈련 및 취업 소개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원하는 청소년은 34.8%, 현금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32.4%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컴퓨터나 수영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바라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38.5%이며, 캠프(33.8%)나 동아리 활동(36.5%)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또한 무료 진료를 원하는 청소년은 31.3%이고, 운동 지도 및 운동 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0.6%로 나타났다.

<표 3-9> 저소득층 청소년의 복지 프로그램 참여 및 희망 여부

(단위 : %, 명)

서비스 프로그램	현재 이용 여부		차후 희망 여부		전체
	이용함	이용 안함	희망함	희망 안함	
세탁서비스	4.8	95.3	23.1	76.9	(800)100.0
급식지원・밑반찬 제공	22.0	78.0	22.5	77.5	(800)100.0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6.9	93.1	21.3	78.8	(800)100.0
주거환경개선자업 (도배, 수리)	6.4	93.6	28.0	72.0	(800)100.0
이・미용 서비스	7.8	92.3	26.5	73.5	(800)100.0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7.0	93.0	30.6	69.4	(800)100.0
무료진료	9.0	91.0	31.3	68.8	(800)100.0
음주나 흡연교육	5.6	94.4	19.0	81.0	(800)100.0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8.3	71.8	16.4	83.6	(800)100.0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22.3	77.8	32.4	67.6	(800)100.0
아르바이트 알선	7.1	92.9	41.1	58.9	(800)100.0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	5.0	95.0	23.6	76.4	(800)100.0
또래지지 프로그램	7.1	92.9	22.6	77.4	(800)100.0
자원봉사 프로그램	13.4	86.6	27.9	72.1	(800)100.0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8.0	92.0	25.5	74.5	(800)100.0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쉽 등)	8.4	91.6	27.1	72.9	(800)100.0
사회교육(컴퓨터・수영・피아노 등)	14.4	85.6	38.5	61.5	(800)100.0
동아리 활동	14.1	85.9	33.8	66.3	(800)100.0
청소년캠프	11.1	88.9	36.5	63.5	(800)100.0
학습지도(방과후교실・청소년공부방)	23.0	77.0	27.0	73.0	(800)100.0
진로지도 프로그램	7.0	93.0	33.5	66.5	(800)100.0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5.1	94.9	34.8	65.3	(800)100.0

출처 : 이혜연 외(2001).

황창순 외(1999)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청소년은 가정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50.3%)이라고 응답했으며 일반 청소년은 '부모님의 이해부족'(44.1%)라고 응답하였다. 형제・자매간 불화, 부부싸움, 집안식구의 가출, 가족 간의 폭력 등의 항목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가족 간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가족 문제

(단위 : %)

항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부모님의 이해부족	32.8	44.1	38.6
경제적 어려움	50.3	13.3	31.2
부모와의 대화부족	26.0	17.0	21.4
형제・자매간 불화	18.1	18.1	18.1
부부싸움	16.4	6.4	11.2
집안 식구의 가출	7.3	2.1	4.7
가족간의 폭력	4.5	3.7	4.1
기타	11.9	24.5	18.4
전체	48.5(177)	51.5(188)	100.0(365)

출처 : 황창순 외(1999).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의료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관리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황창순 외(1999)의 연구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간다'의 문항에 일반 청소년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인 반면 저소득층 청소년은 13.1%로 나타나, 병원에 가기 힘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혜연 외(200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과 관련해서 가족이 갖은 어려움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21.0%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9.6%가 '환자로 인한 심리적 갈등', 4.4%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음', 2.2%가 '간병으로 인한 학교생활 제약'으로 응답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25.4%(15명)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11.8%(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질병발생시 병원이용을 못하는 정도

(단위 : %, 명)

세부계층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68.8	16.6	11.1	2.0	1.5	100.0(199)
일반청소년	93.9	3.5	1.8	·	0.9	100.0(228)
전체	82.2	9.6	6.1	0.9	1.2	100.0(427)

출처 : 황창순 외(1999).

<표 3-12>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

(단위 : %, 명)

구분	환자로 인한 심리적갈등	경제적 부담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음	간병으로 인한 학교 생활 제약	없다	기타	전 체
전체	9.6	21.0	4.4	2.2	56.8	6.1	(595)100.0

출처 : 이혜연 외(2000).

이상에 의하면 가족해체는 한부모 가족,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시 가족해체가 유발되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각 지역 사회 관련기관들은 이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알선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폭력 가정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은 '집안 일'로 간주되어 국가의 개입은 기피되어 왔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일종이지만,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간주되어왔다.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방치되어져 가정 내에서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도 발생하였다. 여기서는 폭력 가정 중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심각 아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아동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가정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속한 격리조치와 심리적인 치료 등을 통한 성향개선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1. 아동학대의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199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심한 야단을 맞아본 비율은 조사 대상 학생청소년의 83.2%,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체벌을 받아본 경험은 학생청소년의 44.8%였으며, 체벌 경험자 중 체벌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학생청소년의 37.4%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초・중・고생 1,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영실, 2000)결과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은 29.4%, 중학생은 44.7%, 고등학생은 45.1%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43.3%, 중학생의 53.4%, 고등학생의 39.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많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더 많았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는 '개만 못한 것, 멍청한 것, 못된 것, 나쁜 것, 망할 것, 후레자식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초등학생, 32.7%, 중학생 34.2%,) 초・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은 '학교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 오라, 집안 일이나 해라'는 말을 들었다가 36.8%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신체적 폭력으로는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거나 손으로 얼굴 등을 맞거나 굵은 막대기 둥으로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신체적 학대를 한가지 이상 경험하였다는 273명의 중학생 중 '칼이나 송곳, 망치로 위협 당했다가 5명(1.8%), 팔다리가 묶였었다가 1명(0.4%)있었고, 고등학생 중에는 '흉기로 위협 당했다'가 10명(4.5%), '꼬집히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와 팔다리가 묶였었다'가 각각 2명(0.9%), '칼이나 송곳 등에 찔렸다'와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혔었다'가 각각 1명(0.4%)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미미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처벌의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크며, 부모의 학대가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3> 아동학대의 유형별 피해 정도

(단위 : 명,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대무	학대유	계	학대무	학대유	계	학대무	학대유	계
방임	248 (46.1)	290 (53.9)	538 (100.0)						
정서적 학대	382 (70.6)	159 (29.4)	541 (100.0)	285 (55.2)	231 (44.8)	516 (100.0)	314 (54.9)	258 (45.1)	572 (100.0)
신체적 학대	305 (56.7)	233 (43.3)	538 (100.0)	238 (46.6)	273 (53.4)	511 (100.0)	343 (60.5)	224 (39.5)	567 (100.0)

출처 : 전영실(2000).

<표 3-14> 신체적 학대의 피해 실태(중학생)

(단위 : 명, %)

	전혀 없음	1번	2-5번	6-10번	11번 이상	계
손으로 얼굴, 머리 뺨등을 맞았다	351 (68.3)	79 (15.4)	53 (10.3)	14 (2.7)	17 (3.3)	514 (100.0)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았다	306 (59.3)	78 (15.1)	83 (16.1)	20 (3.9)	29 (5.6)	516 (100.0)
굵은 막대기, 몽둥이로 맞았다	382 (74.2)	63 (12.2)	44 (8.5)	12 (2.3)	14 (2.7)	515 (100.0)
꼬집히거나 할퀴을 당했다	455 (88.2)	35 (6.8)	13 (2.5)	5 (1.0)	8 (1.6)	516 (100.0)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450 (87.4)	35 (6.8)	19 (3.7)	1 (0.2)	10 (1.9)	515 (100.0)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463 (89.9)	26 (5.0)	17 (3.3)	2 (0.4)	7 (1.4)	515 (100.0)
던진 물건에 맞았다	462 (89.5)	30 (5.8)	19 (3.7)	1 (0.2)	4 (0.8)	516 (100.0)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에 지짐을 당했다	512 (99.2)	2 (0.4)	2 (0.4)			516 (100.0)
칼이나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당했다	510 (98.8)	6 (1.2)				516 (100.0)
칼이나 송곳 등에 찔렸다	513 (99.4)	2 (0.4)	1 (0.2)			516 (100.0)
팔, 다리가 묶였었다.	513 (99.4)	3 (0.6)				516 (100.0)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혔었다	513 (99.4)	2 (0.4)	1 (0.2)			516 (100.0)

출처 : 전영실(2000).

<표 3-15> 신체적 학대의 피해 실태(고등학생)

(단위 : 명, %)

	전혀 없음	1번	2-5번	6-10번	11번 이상	계
손으로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았다	403 (70.7)	83 (14.6)	55 (9.6)	10 (1.8)	19 (3.3)	570 (100.0)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맞았다	430 (75.2)	62 (10.8)	50 (8.7)	13 (2.3)	17 (3.0)	572 (100.0)
굵은 막대기, 몽둥이로 맞았다	493 (86.2)	40 (7.0)	21 (3.7)	10 (1.7)	8 (1.4)	572 (100.0)
꼬집히거나 할퀴을 당했다	525 (91.8)	17 (3.0)	14 (2.4)	8 (1.4)	8 (1.4)	572 (100.0)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501 (87.6)	27 (4.7)	23 (4.0)	8 (1.4)	13 (2.3)	572 (100.0)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535 (93.7)	14 (2.5)	11 (1.9)	5 (0.9)	6 (1.1)	571 (100.0)
던진 물건에 맞았다	520 (91.1)	26 (4.6)	17 (3.0)	3 (0.5)	5 (0.9)	571 (100.0)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에 지짐을 당했다	566 (99.1)	1 (0.2)	1 (0.2)	2 (0.4)	1 (0.2)	571 (100.0)
칼이나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당했다	558 (97.6)	7 (1.2)	4 (0.7)		3 (0.5)	572 (100.0)
칼이나 송곳 등에 찔렸다	567 (99.1)	2 (0.3)	2 (0.3)		1 (0.2)	572 (100.0)
팔, 다리가 묶였었다.	566 (99.0)	2 (0.3)	3 (0.5)		1 (0.2)	572 (100.0)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혔었다	566 (99.0)	3 (0.5)	2 (0.3)		1 (0.2)	572 (100.0)

자료 : 전영실(2000).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동법 제 18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운영의 하나로 2000년 10월 5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한해동안 1391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 2,946건 중 2,478건(84.1%)이 아동학대 사례로, 298건(10.1%)이 잠재위험 사

례로, 170건(5.8%)이 일반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만 9~11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626건(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6~8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604건(24.4%), 만 12~14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는 428건(17.3%), 만 3~5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604건(16.1%), 만 15~17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는 194건(7.8%)으로 나타나, 학대에 무방비 상태인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도 약 5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6>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건, %)

특 성		발생건수
성 별	남	1,332(53.8)
	여	1,146(46.2)
연 령(만)	1세 미만	18(0.7)
	1~2세	208(8.4)
	3~5세	400(16.1)
	6~8세	604(24.4)
	9~11세	626(25.3)
	12~14세	428(17.3)
	15~17세	194(7.8)
전 체		2,478(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보면, 아동학대 2,478건 중 25.9%가 학대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아동학대 사례 총 누계 3,660건 중 방임이 36.3%, 신체적 학대 28.4%, 정서적 학대 26.3%, 유기 5.8%, 성학대 3.2%로 각각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중에는 멍듦이 447건, 긁힘 126건, 찢김 66건, 꼬집힘 40건, 골절 37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화상 23건, 아동 던짐 19건, 목조름 16건, 뇌손상 11건, 두개골 골절 8건, 경뇌막 혈종 4건 등은 아동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정도의 위험한 경우도 있다. 정서적 학대 중에는 소리지름이 6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심한 욕설 482건, 위협·협박이 205건,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98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표 3-17> 신체적 학대 유형 (복수응답)

(단위 : 건, %)

내용	외상없음	멍듦	긁힘	꼬집힘	찢김	골절	찔림	물어뜯김	목조름	삠접질림	아동던짐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골절	경뇌막혈종	뇌손상	기타	전체
계	501 (35.8)	447 (32.0)	126 (9.0)	40 (2.9)	66 (4.7)	37 (2.6)	11 (0.8)	8 (0.6)	16 (1.1)	12 (0.9)	19 (1.4)	6 (0.4)	23 (1.7)	0 (0.0)	3 (0.2)	8 (0.5)	4 (0.3)	11 (0.8)	60 (4.3)	1,389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표 3-18> 정서적 학대 유형 (복수응답)

(단위 : 건, %)

내용	소리지름	무시	심한 욕설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협박	흉기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옷벗겨 내쫓음	감금	기타	전체
계	656 (35.0)	123 (6.6)	482 (25.8)	205 (11.0)	77 (4.1)	98 (5.2)	18 (1.0)	55 (2.9)	158 (8.4)	1,872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은 폭언(109명, 26.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관심・대화단절(65명, 16.05%), 이해부족(15.31%), 상습적 구타(46명, 11.36%)의 순이었다.

<표 3-19>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단위 : 명, %)

내용 / 인원	상습적인 구타	폭언	무관심・대화단절	이해부족	기타	무응답	기타(9,14%) :부모님의 의심(2.22%), 형제간의 차별대우(1.23%), 부모님의 이혼(0.99%).
N (405)	46	109	65	62	37	86	
% (100)	11.36	26.91	16.05	15.31	9.14	21.48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2).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초・중・고생 모두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영실(2000)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77.5%, '성적이 떨어져서'가 17.4% 등이었고, 고등학생도 중학생과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70.5%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이 떨어져서'라는 응답은 20.5%로 중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로부

터 신체적 학대를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중고생 모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약 89~91%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대의 상당부분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시작되며, 자녀 입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에게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체벌이 나중에는 감정통제가 되지 않아 심한 구타나 폭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도 한해동안 1391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전체 2,478건 중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경우는 39.0%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1,767건으로 전체의 71.3%나 차지하였으며, 일회성이라는 응답은 10.7%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이로써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정기적・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영실(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빗자루 등으로 맞은 경험이 지난 1년 사이에 11번 이상이었다는 중학생은 5.6%이고, 특히 칼이나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고등학생 중 1년에 11번 이상 위협받았다는 경우는 0.3%로 나타나, 이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보여진다.

<표 3-20>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구 분	발 생 빈 도
거의매일	966(39.0)
2~3일에 한 번	456(18.4)
일주일에 한 번	345(13.9)
2 주일에 한 번	113(4.6)
1 개월에 한 번	82(3.3)
2~3일에 한 번	61(2.5)
6 개월에 한 번	23(0.9)
1 년 에 한 번	10(0.4)
일 회 성	265(10.7)
기 타	157(6.3)
총 계	2,478(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2. 학대행위자와 장소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2,478건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103(8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인척 54건(2.2%), 친조모 53건(2.1%), 부모의 동거인 37건(1.5%), 이웃 34건(1.4%) 등 그 밖의 학대 행위자는 375건(15.1%)만을 차지하였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57.8%,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2%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표 3-2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발생건수
부모	친부	1,432(57.8)
	친모	551(22.2)
	계부	21(0.9)
	계모	94(3.8)
	양부	5(0.2)
	양모	0(0.0)
	소계	2,103(84.9)
친조부		24(1.0)
친조모		53(2.1)
외조부		0(0.0)
외조모		5(0.2)
친인척		54(2.2)
형제·자매		6(0.2)
부모의 동거인		37(1.5)
교사		12(0.5)
학원강사		13(0.5)
시설종사자		5(0.2)
이웃		34(1.4)
낯선사람		20(0.8)
파악안됨		80(3.2)
기타		32(1.3)
소계		375(15.1)
총계		2,478(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한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 전체 학대 사례 중 80.3%의 학대가 발생되어(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가정이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장소로 변하여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장 소	발 생 수
가 정 내	1,990 (80.3)
친 척 집	82 (3.3)
이 웃 집	24 (1.0)
놀 이 방	29 (1.2)
어 린 이 집	26 (1.1)
유 치 원	5 (0.2)
학 교	11 (0.4)
학 원	17 (0.7)
길 가 (집근처)	55 (2.2)
병 원	18 (0.7)
시 설	27 (1.1)
기 타	194 (7.8)
전 체	2,478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3. 학대 당시 부모의 상황

전영실(200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 당시 부모의 상황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응답과 부모님 두 분이 다투시던 중, 부모님이 술에 취하셨다는 응답이 약 50%정도이며,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진다. 중학생은 부모님이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응답이 29.8%, 부모님이 술에 취하셨던 경우가 6.4%, 부모님이 다투시던 중이 3.2%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도 부모님이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응답이 21.2%, 부모님이 다투시던 중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이 각각 6.5%로 나타나, 부부간의 불화, 부모의 스트레스 등이 자녀에게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정서적 학대 발생당시 부모님의 상황

(단위 : 건, %)

	초등학생 빈도(%)	중학생 빈도(%)	고등학생 빈도(%)
평소와 다름없으셨다	67(48.2)	132(60.6)	152(65.8)
부모님이 화나는 일이 있었다	59(42.4)	65(29.8)	49(21.2)
부모님 두 분이 다투시고 계셨다	8(5.8)	7(3.2)	15(6.5)
부모님이 술에 취하셨다	5(3.6)	14(6.4)	15(6.5)
계	139(100.0)	218(100.0)	231(100.0)

출처 : 전영실(2000).

부모의 자녀학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실업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갈등과 폭력이 잦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영실(2000)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아버지의 실직 경험여부에 따라서 초・중・고생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실직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50.0%로 실직 경험이 없었던 경우의 35.9%에 많았다. 또한 아버지의 음주정도별로 보면, 술을 마시는 빈도가 많을수록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71.4%로 다른 경우의 40%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다른 경우의 40%대에 비해 훨씬 많았다.

<표 3-24> 부의 실직 및 음주정도에 따른 정서적 학대

(단위 : 빈도 수,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대무	학대유	학대무	학대유	학대무	학대유
최근5년 부 실직		$x^2=5.04$ *		$x^2=3.64$ *		$x^2=13.13$ ***
있음	32(58.2)	23(41.8)	41(46.1)	48(53.9)	64(42.1)	88(57.9)
없음	343(72.7)	129(27.3)	240(57.1)	180(42.9)	244(59.2)	168(40.8)
부의 음주정도		N.S		$x^2=9.41$ *		$x^2=13.88$ *
전혀안함	55(75.3)	18(24.7)	48(59.3)	33(40.7)	59(69.4)	26(30.6)
가끔	263(70.7)	109(29.3)	163(57.6)	120(42.4)	159(53.0)	141(47.0)
자주	47(69.1)	21(30.9)	65(53.3)	57(46.7)	83(56.8)	63(43.2)
거의매일	12(54.5)	10(45.5)	8(28.6)	20(71.4)	12(34.3)	23(65.7)

* P<0.05; ** P<0.01; *** P<0.001.
출처 : 전영실(2000).

<표 3-25> 부의 음주정도, 실직에 따른 정서적 학대

(단위 : 빈도 수,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대무	학대유	학대무	학대유	학대무	학대유
최근5년 부 실직		$x^2=3.91$ *		N.S		$x^2=9.23$ **
있음	24(44.4)	30(55.6)	36(41.4)	51(58.6)	76(50.0)	76(50.0)
없음	275(58.5)	195(41.5)	197(47.2)	220(52.8)	261(64.1)	146(35.9)
부의 음주정도		$x^2=9.67$ *		N.S		N.S
전혀안함	43(58.9)	30(41.1)	35(43.2)	46(56.8)	59(70.2)	25(29.8)
가끔	217(59.0)	151(41.0)	136(48.7)	143(51.3)	176(59.5)	120(40.5)
자주	35(50.7)	34(49.3)	58(47.5)	64(52.5)	86(58.9)	60(41.1)
거의매일	6(27.3)	16(72.7)	7(25.9)	20(74.1)	19(54.3)	16(45.7)

* P<0.05; ** P<0.01; *** P<0.001.
출처 : 전영실(2000).

이상에 의하면 학대받는 아동에게 더 이상 가정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에 개입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활동 및 교육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친족 성학대

친족 성학대는 극소수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정신 병리적 현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타의 성학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성학대 유형이다. 서울시립아동연구소,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등에 의뢰된 만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상담 300사례를 분석한 강은영(2000)의 결과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를 둘러싼 일반적인 사회규범에도 불구하고 친족에 의한 성학대 즉 가정내 성학대는 전체 300사례 중 109사례로 36.3%를 차지하였다. 친족 중에서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가 43사례(39.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촌 오빠가 26사례로 나타났다.

<표 3-26> 친족 성학대의 가해자 분포

(단위 : 명, %)

가 해 자		사 례 수 (%)	
근친	친부	32(29.4)	64 (58.7)
	친모	1(0.9)	
	계부	9(8.3)	
	계모	1(0.9)	
	조부	5(4.6)	
	오빠, 남동생	14(12.8)	
	이복오빠	2(1.8)	
기 타 친인척	(외)삼촌	15(13.8)	45 (41.3)
	사촌형제	26(23.9)	
	고모부	2(1.8)	
	이모/숙모	2(1.8)	
계		109(100)	

출처 : 강은영(2000).

다음으로 친족 성학대의 피해 횟수를 보면, 학대 피해가 1~2회로 그친 경우가 26.4%, 그 이상인 경우가 73.6%로 친족 성학대는 일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는 단지 2사례만이 1~2회의 피해를 당했고(4.7%), 나머지 41사례가 그 이상으로 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95.3%).

<표 3-27> 친족 성학대의 피해 횟수

(단위 : 건, %)

	부모	오빠	조부	삼촌	사촌	그외	계
1 - 2 회	2(4.7)	2(13.3)	2(40.0)	7(53.8)	13(50.0)	2(50.0)	28(26.4)
그 이상	41(95.3)	13(86.7)	3(60.0)	6(46.2)	13(50.0)	2(50.0)	78(73.6)
계	43(100)	15(100)	5(100)	13(100)	26(100)	4(100)	106(100)

출처 : 강은영(2000).

다음으로 친족 성학대가 노출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많은 노출 원인은 피해 아동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경우(43.1%)와 누군가에게 학대장면이 발각된 경

우(41.4%)이다. 친족 성학대 중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학대사실을 가족이나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고 발각된 경우가 많은데, 전체 25사례 중 15사례로 60%에 이른다. 특히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말하고자 해도 어머니가 가출, 사망, 이혼 혹은 질병으로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아버지에 의한 성학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친족 성학대의 노출과정에서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피해 아동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며, 학대 행위를 발견하는 사람도 대부분 어머니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질 때 친족 성학대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8> 친족 성학대 사실의 노출

(단위 : 건, %)

	부모	오빠	조부	삼촌	사촌	그외	계
노출된 경우 (63.0)							
피해자의 발설	5	1	4	4	11		25(43.1)
신체 및 행동이상 발견(어머니)	1				3		4(6.9)
신체 및 행동이상 발견(주변인)	4						4(6.9)
발각	15	1		4	3	1	24(41.4)
임신				1			1(1.7)
소계	25 (69.4)	2 (16.7)	4 (80.0)	9 (64.3)	17 (77.3)	1 (33.3)	58 (100)
노출되지 않은 경우 (37.0)	11 (30.6)	10 (83.3)	1 (20.0)	5 (35.7)	5 (22.7)	2 (66.7)	34 (100)
계	36 (100)	12 (100)	5 (100)	14 (100)	22 (100)	3 (100)	92 (100)

주 : 학대 사실이 노출여부가 확인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다.
출처 : 강은영(2000).

아동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발달 및 적절한 훈육, 양육방식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내에서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생활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아동학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4장 학교와 청소년 인권

학교의 주된 기능은 교육 기능과 사회화 기능에 있다. 교육 기능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전수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며, 사회화 기능은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식, 기능, 태도, 규범 등을 습득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급속히 발달 확산되고,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난립되면서 교육에 대한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가치가 다원화되고 세대간 격차가 커지면서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의 규준 가치는 찾기 어렵고, 그나마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수용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기성 세대들이 이룩해 놓은 자본주의 사회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신세대들은 집단주의를 혐오하고 개인주의를 옹호한다. 집단주의나 획일주의에 대한 거부는 개개인의 개별성을 포용하는 다원성이나 개방성과 상통하고, 사회의 획일적 통제, 압력에 대한 거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신세대의 특징과 학교와 충돌되는 이유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똑같은 교육과정의 적용과 개성 표현을 억제시키는 학교 규율과 종래의 학교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문화가 신세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장 발달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교육받을 권리의 소극적 의미는 교육기회로부터의 접근을 차단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이다. 교육받을 권리의 적극적 의미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교육의 조건 정비를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재학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학습자의 시각에서 교육 내용의 선택 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 교육 내용의 요구 권리, 수업과정에의 참여 권리,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유리된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 학생의 선택과 수준이 무시된 획일적인 교육환경,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력이 억압당하는 학교 문화에 대한 비판 없이는 학생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물리적인 교육 여건과 주관적인 교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거나 위축되어 있는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물리적 교육여건

청소년 교육의 질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상급학교 진학률, 교육비,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중도탈락률,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 물리적 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열악한 교육 여건은 학생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과 선택의 권리나 자율적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2년도 기준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9.3명으로 2001년에 비해 0.8명 감소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15.4명으로 전년도 대비 5.5명이나 줄었다.

<표 4-1> 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수	학생수	1인당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1인당 학생수
총계	95,283	1,841,030	**19.3**	114,304	1,795,509	**15.4**
서울	19,468	361,244	18.6	21,098	378,168	**17.1**
부산	7,350	143,244	19.5	9,031	146,617	16.2
대구	4,817	105,561	21.9	6,126	101,125	16.7
인천	4,786	107,810	**22.5**	5,985	99,275	16.6
광주	2,740	59,823	21.8	3,552	58,443	16.6
대전	2,939	59,748	20.3	3,484	58,804	16.9
울산	2,011	47,075	**23.4**	3,601	42,700	16.5
경기	16,461	384,591	**23.4**	20,755	329,606	13.1
강원	3,573	57,806	16.2	4,508	58,679	16.2
충북	3,200	57,591	18.0	3,618	58,025	14.0
충남	4,278	70,521	16.5	5,064	72,464	14.0
전북	4,789	74,163	15.5	5,745	75,869	13.2
전남	5,336	72,478	13.6	6,063	77,697	12.7
경북	5,892	98,199	16.7	7,064	100,360	14.0
경남	6,464	120,998	18.7	8,149	117,448	14.1
제주	1,179	20,178	17.1	1,461	20,229	13.6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의 경우, 울산이나 인천 등 광역시와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많은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울이 가장 많고 광역시 역시 전반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학생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며 농촌 지역의 학교 또는 학급이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학생수의 감소가 더 두드러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어 교육여건은 좋지 않은 편이다.

2.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과밀학급 해소 정책의 시행과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감소치는 미미한데 반해 고등학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34.7명으로 2001년 41.6명에 비해 6.9명 줄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2001년 대비 4.2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 측면에서 보면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좋다는 점에 긍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표 4-2>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	실업계
1999	35.4	38.9	45.9	47.2	44.6
2000	35.8	38.0	42.2	44.1	40.3
2001	35.6	37.3	39.0	41.6	36.4
2002	34.9	36.7	33.5	34.7	32.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b).

3. 진학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중등교육도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

에 따라 개방되어야 한다.

교급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상급 학교에의 진학률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1995년 이후 99.9%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99.6%로 상당히 높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74.2%로 고등학생의 약 1/4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고학력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1995년 이후 99.9%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99.6%로 상당히 높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74.2%로 고등학생의 약 1/4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고학력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교급별 진학률 (1980 - 2002)

(단위 : %)

연 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교육
1980	98.5	84.5	23.7
1985	99.2	90.7	36.4
1990	99.8	95.7	33.2
1995	99.9	98.5	51.4
1998	99.9	99.4	64.1
2002	99.9	99.6	74.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b).

4.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8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생은 중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재정 형편에 따라 1985년 이후에는 도서 벽지 지역에, 1992년 이후에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1년 기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대상은 481천명으로 의무교육 비율은 20.2%로 전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된 것이다.

<표 4-4> 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 현황 (1998-2001)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실 시 대 상	도서・벽지 군 지역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수혜 학생		190	478	487	481
의무교육비율		8.8	19.3	19.3	20.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도 OECD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사 1 인당 학생 수(2001년 기준)는 초등학교 32.1명 . 중학교 21.0명 . 고등학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 중 14.5명 . 고 13.8명)보다 훨씬 많았다.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2.1명 . 중학교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 중 24.0명)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교육 여건이 OECD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5. 교육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교육자료를 분석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7.1%로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로 밝혀졌다. 미국(7.0%), 영국(5.3%), 일본(4.6%)은 물론 OECD 국가 평균(5.5%)보다 1.6%나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40%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치 11%보다도 월등 높고, 조사 참가국 중 최고 높다는 점이다. 초・중등 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17.5%, 대학은 76.0%로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200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01년보다 1,167천원이나 증가하여 3,489천원으로 가장 많은데 초등학생의 공교육비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중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어 3,15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생 1인당 공교육비[1)]

(단위 :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119	157	150
1985	319	300	398
1990	566	699	787
1995	1,412	1,380	1,785
2000	2,023	2,690	2,840
2001	2,362	3,277	3,376
2002	3,489	3,150	3,379

주 : 1) 학교급별 공교육비(국·공·사립 교비+육성회비) 총액을 총 학생 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 중심의 청소년 생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지나친 경쟁은 우리나라를 사교육비 지출 왕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2.96%로 세계 1위라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중앙일보, 2002. 10. 3). 한 조사연구에서는 평균 월 사교육비 지출액이 149,273원으로, 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월 217,100원, 중학생 174,600원, 초등학생 고학년 137,000원, 저학년 118,300원, 취학전 아동 129,300원이라고 보고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의 69.9%가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01. 11. 13).

<표 4-6> 교육비 지출률

(단위 : %)

년도	도시 가구	농촌 가구
1980	5.8	9.4
1985	7.4	11.8
1990	8.1	10.5
1995	9.8	10.5
1990	10.8	9.7
2000	10.9	10.2
2001	11.1	9.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2b).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2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농가의 경우 고등학생 절대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가구의 연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사교육비의 지출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비 부담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각종 과외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56.0%로 가장 높다는 점도 사교육비의 부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6. 중도탈락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8조에서는 국가에서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교실이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1% 내외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199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2001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중학교(1.8%), 고등학교(2.8%) 모두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표 4-7> 학교 중도탈락률

(단위 : %)

교급별 /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1996	1.1	2.6
1997	1.2	2.7
1998	1.0	2.1
1999	0.9	2.2
2000	1.0	2.5
2001	1.1	2.5

주 : 1. 탈락률(%) = (제적 ·중퇴자 및 휴학자 수) ÷(재적 학생수) ×100.
출처 :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지표(2002b).

2002년 기준, 질병, 사망, 가사, 부적응, 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제적, 중퇴, 휴학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의 경우 0.86%,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0.96%, 실업계 3.97%로 나타났다. 전체 중·고등학생 수의 1.31%에 해당되는 학생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01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

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탈락률은 높아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4배 이상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탈락생 중 가사나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77.3%나 된다.

<표 4-8> 제적 중퇴 및 휴학자

(단위 : 명, %)

	전체학생수	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유학/이민	기타
중학교	1,854,641	15,987 (0.86)	234	831	3,190	1,068	2,922	6,491	1,251
일반계고	1,766,529	17,09 (0.96)	215	1,111	5,492	494	3,890	4,459	1,434
실업계고	542,077	21,52 (3.97)	214	618	8,000	2,612	8,639	299	1,147

자료 : 교육통계연보(2003).

7.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흥업소, 러브호텔, 게임제공업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인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변태·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9>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폐기물 수집장	유흥 주점	숙박 업소	당구장	컴퓨터 게임장	만화 가게	노 래 연습장	담배 자판기	비디오 감상실	멀 티 게임장	기 타	계
당초 업소수	46	58	351	82	3,279	1,267	693	655	218	3,061	175	9,885
2000년까지 정비한 업소	43	49	222	77	2,717	1,267	450	654	37	74	77	5,667
2001년도 정비 실적	1	1	6	1	221	-	91	1	31	290	39	682
잔여 업소수	2	8	123	4	341	0	152	0	150	2,697	59	3,536

자료 : 청소년백서(2002c).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9,885개소 중 6,349개(64.2%) 업소를 정비하였으나, 2001년 12월말 현재 3,536개(35.8%) 잔존해 있어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경찰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총 27,304건을 적발하였는데 963명을 구속하고 24,191명을 불구속하였으며, 21,924건을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위반업종은 학교주변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13,242건으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584건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반내용 중 '청소년 주류 제공'은 6,409건으로 23.5%를 차지하여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음주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 출입 묵인과 윤락행위 남녀혼숙으로 인한 위반도 학교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0>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위반내용							조치				행정처분
		청소년 고 용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출입 묵인	윤락 행위 남녀 혼숙	불량 만화 음란 비디오 방영	도박 사행 행위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기타 (훈방)	
2000	52,798	3,834	11,550	4,840	2,257	305	1,497	28,515	1,386	53,130	1,458	1,748	42,779
2001	27,304	1,681	6,409	2,069	1,112	100	750	15,183	963	24,191	1,014	1,136	21,924

자료 : 청소년백서(2002c).

제2절 주관적 학교환경

1. 학교생활문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윤철경 외, 2000)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습부담(44.3%), 엄격한 학교 규칙(26.5%), 폭력(13.7%), 흡연 및 약물중독(7.1%)순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며,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학습 부담으로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 청소년은 13-15세보다 학습 부담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학생의 연령대(18.9%)가 고등학생의 연령대(12.3%)보다 폭력이 문제라고 반응했는데 학교폭력의 발생이나 심각성은 중학생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다른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11> 학교생활 문제

(단위 : 명, %)

		학습부담	엄격한 학교규칙	폭력	흡연 및 약물중독	기타	무응답	전체
전 체		452(44.3)	271(26.5)	140(13.7)	72(7.1)	54(5.3)	32(3.1)	1,021(100.0)
성별	남자	209(40.9)	144(28.2)	76(14.9)	38(7.4)	26(5.1)	18(3.5)	511(100.0)
	여자	243(47.6)	127(24.9)	64(12.5)	34(6.7)	28(5.5)	14(2.7)	510(100.0)
연령별	13-15	178(34.5)	140(27.1)	118(22.9)	41(7.9)	26(5.0)	13(2.5)	516(100.0)
	16-18	271(54.2)	130(26.0)	22(4.4)	30(6.0)	28(5.6)	19(3.8)	500(100.0)

출처 : 윤철경 외(2000).

학교생활에서 '폭력'이 문제가 될 때 어떠한 유형의 폭력이 심각한 지를 알아본 바,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은 집단따돌림(50.4%)이며, 그 다음으로 학생간 금품갈취, 학생의 교사폭력, 총기폭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2>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

(단위 : 명, %)

		학생간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학생의 교사폭행	총기폭력	무응답	전체
전 체		260(25.5)	515(50.4)	47(4.6)	64(6.3)	135(13.2)	1,021(100.0)
성별	남자	165(32.3)	219(42.9)	21(4.1)	29(5.7)	77(15.5)	511(100.0)
	여자	95(18.6)	296(58.0)	26(5.1)	35(6.9)	58(11.4)	510(100.0)
연령별	13-15	187(36.2)	240(46.5)	24(4.7)	32(6.2)	33(6.4)	516(100.0)
	16-18	71(14.2)	274(54.8)	22(4.4)	31(6.2)	102(20.4)	500(100.0)

출처 : 윤철경 외(2000).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폭력 유형은 집단 따돌림과 학생간 금품갈취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금품갈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고, 13-15세 청소년은 16-18세 청소년보다 금품갈취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

한편, 학생의 교사폭력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6%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상실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하며, 권리를 누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2. 학교생활 만족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00)에 나타난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편이다. 학교생활 내용 중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육방법,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다. 1996년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학교시설(15.5%)이었는데 2000년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조사에서도 냉난방 시설(24.2%)과 화장실(22.3%)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여전히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적지 않고, 일반 사회시설에 비해 교실 조명이 부실하고, 운동장도 좁고 체력단련 시설도 부족하여 안락하게 수업을 받거나 학업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3> 학생의 학교생활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44.5	45.9	9.6	100.0	40.3	44.3	15.4	100.0
교육내용(수준)	33.6	50.1	16.3	100.0	26.6	50.5	22.9	100.0
교육방법(수업지도,평가)	26.4	46.4	27.2	100.0	20.2	44.3	35.5	100.0
학교시설 및 설비	19.5	40.0	40.5	100.0	21.5	34.0	44.4	100.0
교우관계	71.9	25.5	2.6	100.0	69.5	27.5	3.0	100.0
교사와의 관계	46.0	39.4	14.6	100.0	36.2	47.7	16.1	100.0
학교주변 환경	27.6	41.3	31.1	100.0	24.0	43.9	32.2	100.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0).

학교생활 만족도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고등학생의 만족도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교급간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교사와의 관계로 고등학생(36.2%)보다 중학생(46.0%)의 만족도가 더 컸다.

3. 학교에 대한 혐오 및 회피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학교 규칙에 대한 저항감이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학교 규칙의 경직성과 거기에서 느끼는 억압성 때문에 학교가 싫고, 수업 내용과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학교가 싫다는 경우는 46%, 현행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33%로 나타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조성남 외, 2002).

<그림 4-1> 학교 회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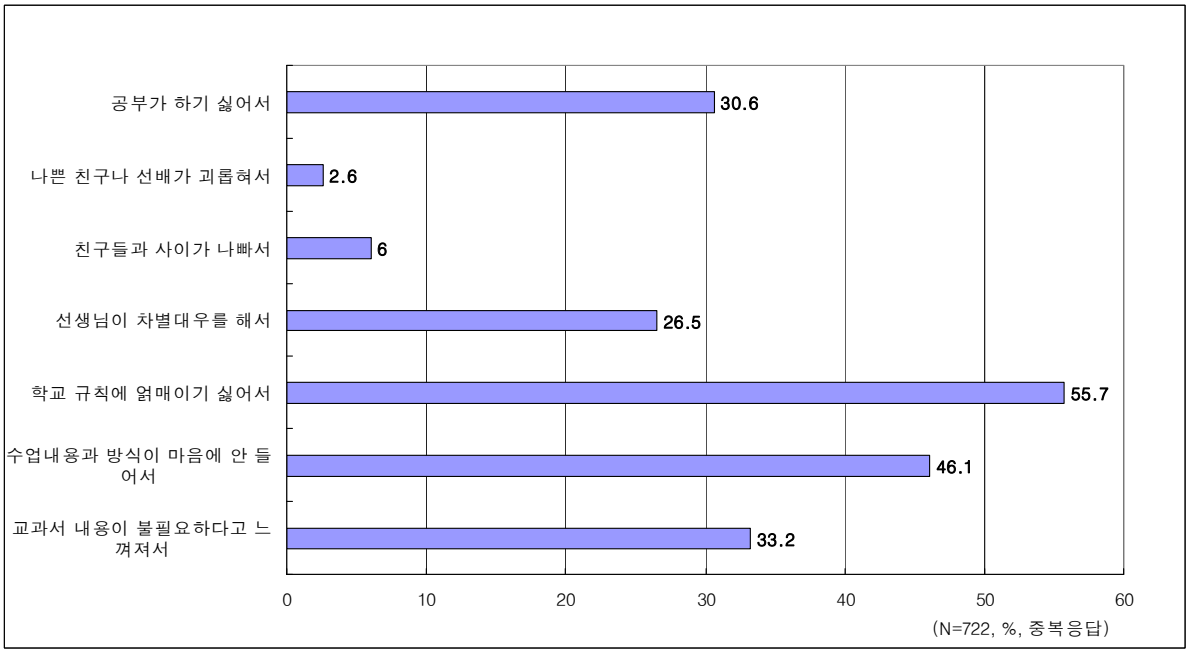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장 큰 문제 역시 복장, 두발 등 억압적인 학교규칙(67.3%)이며, 학교생활 전반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순응형 집단에서조차 절반이 넘는 52.2%가 복장, 두발 등 외모에 대한 교칙의 억압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시제도

에 대한 불만이 41.3%, 학교 편의시설 불편이 34.9%, 수업내용 및 교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율이 33.9%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불만은 27.4%인데 또래집단 유형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서, 저항형 학생의 경우 체벌에 대한 불만이 43.8%로 순응형 학생 15.7%보다 월등 많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만이 36.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 교육 현실에 대한 고등학생의 불만 사항 (복수응답)

(단위 : %, 명)

항 목		전체	또래집단 유형			학교생활 만족도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불만족	보통	만족
복장, 두발 등 교칙		67.3	52.2	69.4	81.3	74.8	63.0	57.4
수업 및 입시제도	교과서의 내용과 양	17.7	20.0	17.7	10.4	17.1	19.7	16.6
	교수방식(수업내용, 방식)	33.9	42.6	33.0	22.9	35.4	36.1	28.4
	입시제도	41.3	54.8	39.9	18.1	36.8	43.3	47.9
시설 및 활동지원	학교시설 및 학교기자재 부족	26.2	33.9	26.0	12.5	23.8	27.4	29.6
	편의시설 불편	34.9	34.8	35.9	25.0	30.1	39.4	39.1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19.4	20.9	19.1	20.8	14.8	22.6	24.9
체벌		27.4	15.7	28.6	43.8	36.8	17.8	20.1
교내폭력		4.6	6.1	4.4	4.2	4.9	1.4	7.7
N		(722)	(115)	(549)	(48)	(345)	(208)	(169)

출처 : 조성남 외(2002).

4. 교사의 공정성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선생님이 편애를 한다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선생님이 공평하다고 평가하는 고등학생은 12.2%에 불과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반응이 63.8%로 선생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학생 편애요인은 성적, 규칙 순응, 집안배경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된 요인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를 보유한 학생에 대한 관심과 편애로 전체 응답자의 63.4%에 이른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 중 20.6%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교사의 편애 대상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림 4-2> 교사의 공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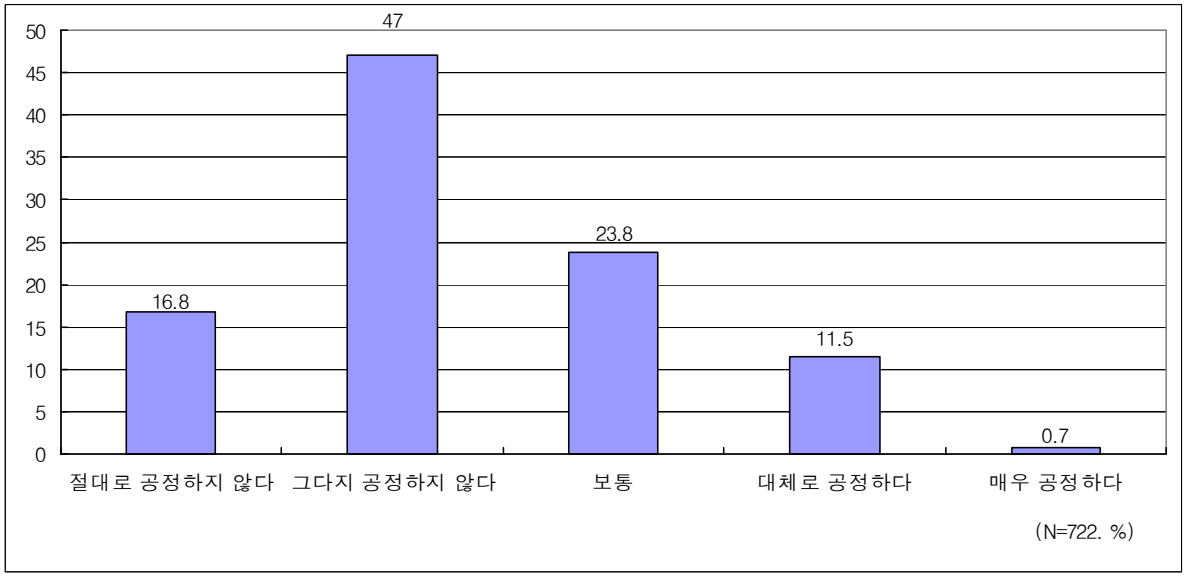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규칙을 준수하고 순응하는 학생을 교사가 편애한다고 지각하였고, 학교에서 반항적인 학생들은 집안 배경이 좋거나 규칙 준수 및 순응 학생을 편애한다고 보았다.

<표 4-15> 교사의 편애 및 차별 요인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서울 지역		성 별		또래집단 유형		
		강남	강북	남	여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성적우수 / 특기보유 학생	63.4	64.5	62.4	64.3	62.6	65.2	64.1	52.1
집안배경이 좋은 학생	10.4	13.7	7.1	8.7	12.0	9.6	9.8	16.7
규칙 준수 및 순응 학생	20.6	14.5	26.6	23.6	17.8	21.7	20.4	25.0
외모가 우수한 학생	1.5	2.2	0.8	0.3	2.7	-	1.6	-
마음씨가 착한 학생	1.1	1.1	1.1	0.3	1.6	0.9	1.3	-
기타	3.0	4.0	2.0	2.8	3.3	2.6	2.8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22)	(358)	(364)	(356)	(366)	(115)	(549)	(46)

출처 : 조성남 외(2002).

학교성적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조사결과(윤철경 외, 2000)는 앞서의 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학교성적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 보장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9.7%이고,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59.2%로 나타나 10명의 6명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 인식은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 청소년(63.9%)과 16-18세 청소년(68.0%)는 학교성적으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표 4-16> 학교성적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단위 : 명, %)

		매우 많이 보장	보장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무응답	전체
전 체		109(18.0)	296(29.0)	452(44.3)	152(14.9)	12(1.2_	1021(100.0)
성별	남 자	72(14.1)	158(30.9)	194(38.0)	84(16.4)	3(0.6)	511(100.0)
	여 자	37(7.3)	138(27.1)	258(50.6)	68(13.3)	9(1.8)	510(100.0)
연령별	13-15	80(15.5)	170(32.9)	202(39.1)	58(11.2)	6(1.2)	516(100.0)
	16-18	29(5.8)	125(25.0)	247(49.4)	93(18.6)	6(1.2)	500(100.0)

출처 : 윤철경 외(2000).

제3절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지원

1. 교육 보호 청소년

헌법 제34조 2항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안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1996년부터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중학생과 실업고등학생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던 교육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인 일반계 고등학생 또한 교육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말 18세 미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1,345,526명 중 24.7%인 332,628명이다.

<표 4-17> 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 수 : 2001년

(단위 : 명, %)

생활보호 아동수(A)	생활보호 대상자수(B)	생활보호 대상자 대 비율 (A/B)
332,628	1,345,526	24.7

자료 : 통계청(2002b).

2. 결식 경험 및 학교의 급식 지원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건강 관리를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식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서울과 안산, 성남의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때가 있는지를 알아본 바(황창순 외, 1999), 저소득층 청소년(12.5%)은 일반 청소년(1.3%)에 비해 결식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결식 경험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더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공부방으로부터 급식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8> 결식 경험 (도시락포함)

(단위 : %, 명)

세부계층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 청소년	70.4	16.1	9.0	3.5	1.0	100.0(199)
일반 청소년	94.7	3.5	0.4	0.4	0.9	100.0(228)
전체	83.4	9.4	4.4	1.9	0.5	100.0(427)

출처 : 황창순 외(1999).

결식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본적인 생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부는 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를 통해 중식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식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통해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 통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전체 초・중・고등학생 784만명의 약 2.5%인 197,703명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였으

며, 이 중 108,648명에게 방학, 토·공휴일까지 중식을 지원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결식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식 대상 아동을 파악하고 각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는 2001년이 22,000명이며,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15,000명이다.

<표 4-19> 교육인적지원부 및 보건복지부 학생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생수	교육인적자원부 급식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	학생수 대비 비율	지원 아동수
2001	7,813,600	164,000	2.1	22,000
2002	7,840,000	197,703	2.5	15,000
2003	7,639,200	305,568	4.0	15,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3).
출처 : 서문희 외(2003).

전국의 저소득층 청소년 870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여부를 조사한 바(이혜연 외, 2001), 47.2%는 급식 지원을 받았고 52.8%는 급식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급식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방법을 몰라서	창피해서	신청했는데 누락되서	필요하지 않아서	기 타	전 체
성별	남자	12.7	9.2	9.9	50.0	18.3	(142)100.0
	여자	9.6	10.7	5.3	55.6	18.7	(187)100.0
교급별	중학교	10.5	10.5	6.1	52.6	20.2	(228)100.0
	일반고교	6.8	6.8	6.8	61.4	18.2	(44)100.0
	실업고교	15.8	10.5	12.3	49.4	12.3	(57)100.0
전 체		10.9	10.0	7.3	53.2	18.5	(329)100.0

출처 : 이혜연 외(2001).

급식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필요없다'는 비율이 53.2%로 가장 많았고 '방법을 모름'이 10.9%, '창피함'이 10.0%, '신청 누락'이 7.3%의 순으로 나타나, 급식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28.2%는 급식 지원 방법이 개선되면 급식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방식을 알아보면, 학교에서 중식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 모두 지원받는 경우는 9.7%, 학교 중식과 민간단체 도시락 지원은 2.0%, 학교 중식과 일반 식당 석식 지원은 1.5%로 나타났다. 급식 지원을 받는 청소년 중 석식까지 해결되는 청소년은 18.3%로 나타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식생활 지원 상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급식 지원 방식은 교급별로 차이를 보여 중학생(82.3%)과 실업계 고등학생(86.0%)은 학교에서 중식 지원만 해주고 있다는 비율이 높고 석식 지원률이 낮은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36.7%로 타 학생에 비해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석식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현행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단위 : 명, %)

구 분		학교 중식만	학교 중식석식 모두	학교중식 민간단체 석식	학교중식 일반식당 석식	학교중식 민간단체 도시락	기 타	전 체
성별	남자	77.4	11.3	3.2	2.7	2.7	2.7	(186)100.0
	여자	81.0	8.3	6.8	0.5	1.5	2.0	(205)100.0
교급별	중학교	82.3	5.2	5.6	1.7	2.4	2.8	(288)100.0
	일반고교	60.0	36.7	1.7			1.7	(60)100.0
	실업고교	86.0	2.3	7.0	2.3	2.3		(43)100.0
전 체		79.3	9.7	5.1	1.5	2.0	2.3	(391)100.0

출처 : 이혜연 외(2001).

3. 희망 학력 및 성취 가능성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 지, 희망 학력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은 저소득층 청소년보다 희망하는 최종 학력 수준이 더 높았다. 일반 청소년은 대학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청소년보다 많고,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많아 계층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황창순 외, 1999).

<표 4-22> 희망 학력

(단위 : %, 명)

구 분	중학교졸업	고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 청소년	1.0	13.6	71.4	13.6	0.5	100.0(199)
일반 청소년	0.4	4.8	64.5	29.4	0.9	100.0(228)
전 체	0.7	8.9	67.7	22.0	0.7	100.0(427)

출처 : 황창순 외(1999).

자신이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또는 매우 확신한다는 비율은 저소득층 청소년 66.3%이고, 일반 청소년 75.9%로 나타났다. '매우 확신한다'는 일반 청소년(36.0%)은 저소득층 청소년(20.6%) 보다 많았고, '별로 확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청소년(26.6%)에게서 많아, 저소득층 청소년은 자신이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희망 학력을 성취하기 힘든 주된 이유로 많이 지적한 것은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31.3%) 노력 부족(36.1%)이다.

<표 4-23> 희망 학력 성취 불가 이유

(단위 : %, 명)

항 목	저소득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 체
노력부족	29.5	43.5	36.1
능력부족	16.7	11.6	14.3
공부에 흥미없음	30.8	31.9	31.3
부모님의 이해부족	·	1.4	0.7
경제적 곤란	7.7	·	4.1
기타	3.8	2.9	3.4
무응답	11.5	8.7	10.2
전 체	100.0(78)	100.0(69)	100.0(147)

출처 : 황창순 외(1999).

희망 학력을 성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든다면, 저소득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능력 부족'과 '경제적 곤란'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데 까지 공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노력 부족' 때문에 희망 학력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4절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

1. 의사 표현 및 자율적 참여

표현의 자유란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민주 시민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표현의 권리에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활동, 학교 운영, 사적 관심사 및 사적 이익과 관련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표 4-24> 선생님 앞에서 의견 표명 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자유로움	비교적 자유로움	보통	대체로 못함	전혀 못함	계 (수)
전체	13.7	45.6	32.4	7.5	0.8	100.0(664)
성별						
남	15.6	45.0	33.0	5.5	0.9	100.0(327)
여	11.9	46.3	31.8	9.5	0.6	100.0(337)
교급별						
중	14.3	45.2	32.9	6.7	0.9	100.0(343)
고	13.1	46.1	31.8	8.4	0.6	100.0(321)
지역별						
대도시	11.1	49.4	30.5	8.2	0.8	100.0(243)
중・소도시	15.3	43.7	32.5	7.5	1.0	100.0(295)
읍・면	15.1	42.9	35.7	6.3	-	100.0(126)

자료 : 아동의 학교 및 가정생활 만족도 전화조사(2003).
출처 : 서문희 외(2003).

선생님 앞에서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 표명이 자유로운지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매우 또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비율은 59.3%이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여학생의 경우 선생님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0.1%로 남학생의 6.4%보다 다소 많다는 점이다(서문희 외, 2003).

반면,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에 관한 기회에서 학생의 의견 표현은 그다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학교나 학급 운영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문화적 감각을 계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과도한 간섭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 운영에 대해 조사한 바(조성남 외, 2002), 학생회가 학교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한 학생은 44.2%로 가장 많은 반면 전체 학생 의견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학생은 8.4%에 불과했다. 학급 대의원 중심의 운영은 21.2%, 학생 의견 및 교사 지시에 의한 운영은 25.2%로 나타났다. 학생회 운영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강북의 경우 학교 지시 중심의 운영을 한다는 학생이 52.5%이고, 강남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회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 4-25> 학생회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단위 : %, 명)

항 목	전체	지역		성별	
		강남	강북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생 의견 중심의 민주적 운영	8.4	10.6	6.3	7.6	9.3
학급 대의원 중심의 운영	21.2	24.0	18.4	22.5	19.9
학생 의견 + 교사의 지시	25.2	28.5	22.0	23.9	26.5
학교 지시 중심의 운영	**44.2**	35.8	**52.5**	45.5	42.9
무응답	1.0	1.1	0.8	0.6	1.4
N	(722)	(358)	(364)	(356)	(366)

출처 : 조성남 외(2002).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는 학생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생의 참석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0.0%, 참관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은 60.1%인 반면, 참관인으로서 방청만 허용하는 제한된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은 10.1%, 참여를 거부하는 비

율은 9.8%로 나타났다(심성보 외, 2002).

한편, 학생들의 40.9%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중학생(36.9%)보다 고등학생(45.2%)이, 읍·면 지역(37.3%) 학생이나 중·소도시 학생(35.1%)보다 대도시 학생(49.8%)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서문희 외, 2003).

이상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학생들은 적어도 1/3 내지 과반수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 관련하여 학생의 참여나 의견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은 학생의 학습권 요구에 대한 교사의 반영도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심성보 외, 2002).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때 교사의 48.9%만이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학생의 제안을 듣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9.4%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정도의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에 대한 학생의 의견에 대한 수용도는 수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학생의 의견보다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반영하겠다는 비율은 61.0%이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9.0%로 적지 않은 교사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2. 학교 규칙의 정당성

학생들은 학교 규율의 정당성, 합리성에 대하여 의심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학교가 제공하는 가치와 문화가 더 이상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단지 이질적인 것으로서 거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점차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성취의욕을 감퇴되고 있다.

학교 규율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는 더욱 심하다. 학생들은 일부 학교 규칙, 특히 머리모양이나 교복 착용에 관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규칙이 개인의

개성,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것을 인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에서의 교칙 제정 과정의 구성원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교칙 제정에 교직원과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한 경우는 70.1%이고 학생이 참여한 경우는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심성보 외, 2002) 학교 교칙 제정에 있어서 대상자인 학생이 소외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

<표 4-26> 교칙(학칙) 제정 과정의 구성원 분석

(단위 : %)

교직원	42.6
교직원+학부모와 지역인사	27.5
교직원+학생	14.0
교직원+학부모와 지역인사+학생	15.9

출처 : 심성보 외(2002).

교칙 제정에 소외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 학교 규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담배 및 술에 대한 규제(3.8점)와 록카페・나이트클럽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출입 규제(3.4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성교제(2.0점), 및 두발・화장 규제(2.1점), 노래방 출입(2.1점), 복장 및 장신구 규제(2.3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조성남 외, 2003).

이러한 규제에 대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규칙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며, 또래집단 유형별로는 순응형이 대부분 항목에서 4점(5점 척도 평균) 이상의 높은 규칙 준수도를 나타낸 반면, 저항형 집단에서는 규칙을 별로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5점 척도 평균 2점 수준).

<그림 4-3> 학교 규칙의 정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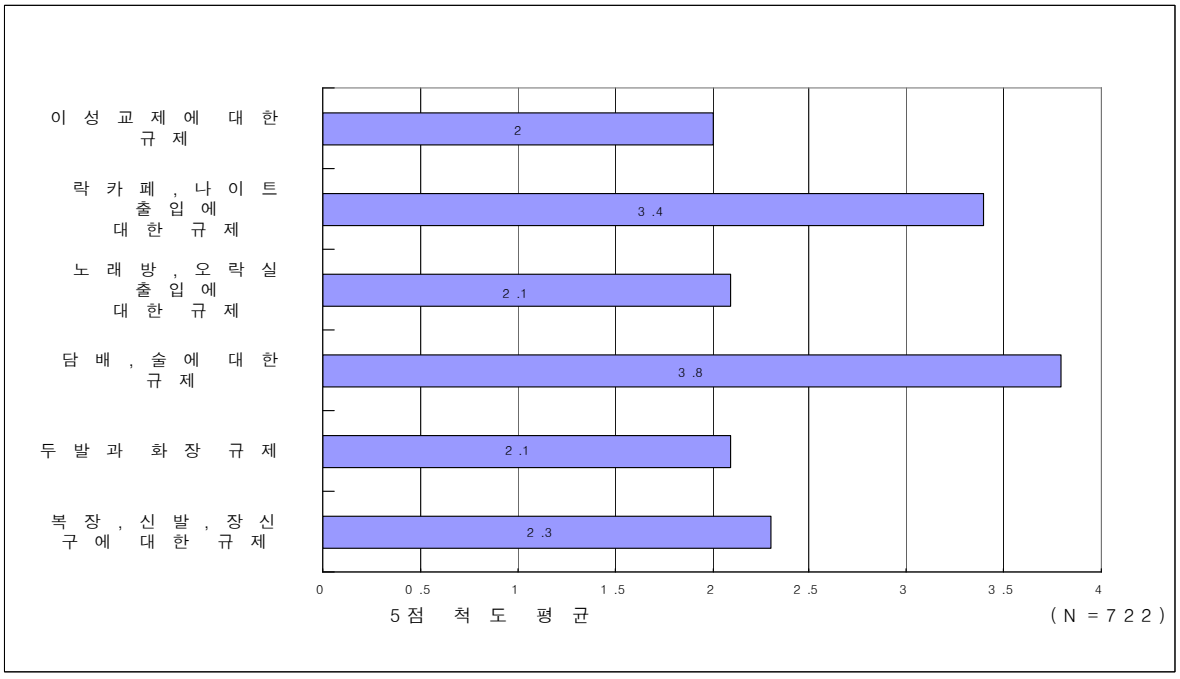

<표 4-27> 학교규칙 준수 정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내 용	전체	남	여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복장, 신발, 장신구 대한 규제	3.6	3.7*	3.6*	4.3***	3.6***	2.5***
두발과 화장 규제	3.5	3.4***	3.6***	4.2***	3.5***	2.3***
담배, 술에 대한 규제	4.1	4.0**	4.3**	4.8***	4.2***	2.1***
노래방, 오락실 출입에 대한 규제	2.6	2.5**	2.7**	3.2***	2.6***	1.6***
록카페, 나이트 출입에 대한 규제	4.2	4.1**	4.3**	4.9***	4.2***	2.4***
이성교제에 대한 규제	3.1	2.9***	3.3***	4.0***	3.0***	1.8***
N	(722)	(356)	(368)	(115)	(549)	(48)

주 : 5점 척도 - ① 전혀 지키지 않는다 ← → ⑤ 항상 지킨다.
출처 : 조성남 외(2002).

부당한 교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5%가 선생님이 감독할 때만 지키겠다고 했으며, 규칙이므로 당연히 지켜야 한다(6.8%)는 의견보다 오히려 교칙이 고쳐질 때까지 지키지 않겠다(11.1%)는 의견이 더 많았다. 아무리 교칙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부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준수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키지 않겠다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저항적 태도는 저항형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편이다.

3. 학교문제에 대한 대처

학교 내에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5점 척도로 하여 고등학생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 4.1점 수준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의사 표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조성남 외, 2002). 의견 주장 필요성에 대한 빈도분포를 보면, 학생들이 의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은 42.2%이고 어느 정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은 38.8%이다. 어느 정도 또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등 또래집단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지 차이가 나는 점을 살펴보면, 순응형은 '어느

<표 4-28> 부당한 학교문제 발생시 학생의 의견주장 필요성

(단위 : 5점 척도 평균, %)

	전체	또래집단 유형			지역-성별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강남		강북	
					남	여	남	여
절대 주장할 필요가 없다	4.2	5.2	3.8	6.3	4.6	5.4	4.4	2.2
별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5.1	3.5	5.3	4.2	9.2	5.4	3.8	2.2
보통	8.9	5.2	9.5	10.4	10.9	7.6	9.3	7.7
어느 정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	38.8	**47.0**	38.4	31.3	36.8	**40.8**	31.3	**46.2**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42.2	39.1	**42.3**	**43.8**	37.9	39.7	**50.0**	41.2
무응답	0.8	-	0.7	4.2	0.6	1.1	1.1	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	(722)	(115)	(549)	(48)	(174)	(184)	(182)	(182)
5점 척도 평균	4.1	4.1	4.1	4.1	3.9	4.0	4.2	4.2

주 : 5점 척도 - ① 절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 ⑤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자료 : 조성남 외(2002).

정도'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높은데 반해 저항형은 교내 부당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보다 강북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강북 남학생의 경

우 적극적인 의견 주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월등 높았으며,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의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적극적인' 의견 주장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많은 편이다.

한편 부당한 학교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응방식을 알아보면, 학급회의나 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의견이 48.8%로 가장 많았고, PC통신 및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이 31.4%이며 학교신문 등 교내 언론매체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14.0%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내 부당한 문제에 대해 건의함에 투서를 한다는 비율은 30.5%, 선생님께 직접 말한다는 비율은 27.3%인 반면, 수업거부 등의 물리적 행동이나 부모님을 통한 간접적인 건의방식은 각각 12-13% 수준으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교내 부당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복수응답)

(단위 : %, 명)

항 목	전체	또래집단 유형			지역-성별			
		순응형	중간형	저항형	강남		강북	
					남	여	남	여
학급회의나 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48.8**	**65.2**	46.6	35.4	50.0	**58.7**	42.9	43.4
건의함 등에 투서를 쓴다	30.5	30.4	**31.7**	16.7	31.6	21.7	27.5	**41.2**
친구들과 힘을 합쳐 수업거부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	12.5	6.1	13.3	18.8	8.6	10.3	**22.0**	8.8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7.3	**32.2**	25.7	29.2	**32.8**	28.8	21.4	26.4
학교신문 등 교내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14.0	15.7	13.5	16.7	18.4	13.0	15.4	9.3
PC통신 등에 글을 올려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31.4**	27.8	31.7	**43.8**	23.6	31.5	34.6	35.7
부모님께 말씀드려 학교측에 건의하도록 한다	13.6	9.6	13.8	**18.8**	9.8	13.0	12.1	19.2
N	(722)	(115)	(549)	(48)	(174)	(184)	(182)	(182)

출처 : 조성남 외(2002).

부당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또래집단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순응형 집단이 학생회 및 학급회의라는 공식통로를 통한 의사표출을 주로 고려하는 반면, 저항형 집단에서는 PC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나 학교신문 등 교내언론을 통한 접근을 선호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공론화 하려는 경향을 보여 줌과 동시에 다소 공격적인 의견 표출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 교사의 학생 권리 침해

심성보 외(2002)에 의해 시행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92.9%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징계 절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28.6%는 학생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 유지의 권리 및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학교나 교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까지를 의미하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다른 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학생의 사생활 권리의 침해 여부

(단위 : %)

권 리 항 목	있다	없다
학생이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67.1	32.9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소지품검사, 몸수색, 사물함 수색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58.3	41.7
학생의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성적이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6.0	64.0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0.2	79.8
학생의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권리	27.5	72.5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5.0	85.0

출처 : 심성보 외(2002).

사생활에 관한 권리 중에서 교사가 가장 많이 침해한 영역은 두발, 복장에 대한 학생의 권리로 67.1%가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지품 검사나 사물함 검색 등에 관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교사는 58.3%인 반면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탐색(20.2%)과 학생의 종교생활에 대한 관여(15.0%) 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교사는 적은 편이다.

학생의 학습권 관련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이를테면 보충수업, 야간자습, 0교시 자습 등에 관해 학생이 선택할 권리에 대해 교사의 88%가 매우 중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한 사례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선택권에 대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교사의 약 50% 정도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으며, 선택권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교사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비율이 62.5%로 월등 높게 나타났다.

이상, 교사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보고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의 사생활 보장의 권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바로 일부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자가 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이유는 교사들이 처한 제도적 상황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데 예컨대 과밀 학급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집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부 교사의 경우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을 학생지도의 유용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여 학생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을 바로 잡아가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체벌

학생 체벌에 대한 논의는 체벌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대립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학생 체벌에 대한 시각은 체벌을 훈육으로 보는 입장과 폭력으로 보는 입장 등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체벌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을 제한하고 인간 존중의 권리를 제한하며 청소년의 심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벌을 사용하는 근거가 아무리 정

당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해도 체벌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두번 째는 체벌이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이며 특히 체벌을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을 때에 동원되는 최후의 수단이고, 교육자의 체벌행위는 가르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학교 내 처벌에 대한 관련 법과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혼란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체벌의 기분 및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각급 학교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흔히 학생 지도를 위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을 때에 호소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체벌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권의 도전으로 인식한다는 점, 체벌 불가론은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간주하면서 피교육자와 교육자, 보호자와 교육자간의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해도, 체벌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과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체벌 사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이며, 징계권의 행사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체벌 경험의 지속성과 일상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생각하면 아무리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한 체벌이라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체벌 자체는 잘못 행동한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나 조치인데도 잘못 행동한 학생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낙인 효과를 피하기 어렵고, 체벌의 일상화는 '모범생'과 '문제아'를 구분짓게 되어 비행을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폭력이 악순환 되고, 법과 도덕의식 발달과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고, 체벌에 익숙한 문화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폭력과 통제에 익숙한 수동적 인간상을 내재시키며, 결국 힘의 위계에 따른 복종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익숙한 행동 기제를 갖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체벌의 사용목적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체벌을 시행한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9.7%나 되었다.

<표 4-31> 교사 체벌사용의 주요 목적

(단위 : 빈도 수, %)

체벌 주 목적	빈도 (%)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142 (45.4)
학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93 (29.7)
문제학생을 징계 및 선도하기 위해서	46 (14.7)
해당학생의 성적 향상 및 학습 증진 효과를 위해서	15 (4.8)
기타 (체벌 안함 등)	17 (5.4)
전 체	313 (100.0)

출처 : 김은경(1999).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을 당한 이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오히려 생활지도 영역에서보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더 빈번하게 체벌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70% 이상이 체벌 당한 적이 있으며 성적이 떨어져서 체벌을 당했다는 비율도 19%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4-32> 각 사유별 학생의 체벌 당한 경험 유무

(단위 : 빈도 수, %)

학생들이 체벌받은 사유	간접체벌 및 매로 맞기	부적절한 체벌
성적저조 및 성적저하	121 (19.3)	70 (15.1)
수업시간 중에 질문에 답하지 못함	121 (19.3)	64 (13.8)
학습태도 불량(숙제・준비물미비, 떠들고 장난치기 등)	496 (79.2)	342 (73.7)
학교교칙 위반(지각, 용의규정위반 등)	194 (31.0)	127 (27.4)
시험 부정행위	9 (1.4)	6 (1.3)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	34 (5.4)	38 (8.2)
교사지시 불응	117 (18.7)	92 (19.8)
타인에 대한 괴롭힘(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등 대인폭력)	16 (2.6)	14 (3.0)
문제행동(술, 담배, 가출 등 지위규범위반 및 재산비행)	23 (3.7)	22 (4.7)
기타	21 (3.4)	6 (1.3)
체벌 받은 학생 수	626	464

출처 : 김은경(1999).

체벌의 사유 가운데 성적 저하 등으로 인한 체벌은 가장 학생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종의 “부당한” 체벌에 속한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없으며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인데, 단지 ‘공부를 못하였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벌을 당한다는 것은 교육 목표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부당한’ 체벌은 입시 행태의 산물로서, 현행 한국 교육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체벌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한국아동학회(2002)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6개월간 교사로부터 단 1번이라도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74.2%, 고등학생의 68.0%이다. 6개월 동안 7회 이상 맞았다는 중학생은 23.8%이며 남학생은 34.8%로 여학생 15.6%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고등학생은 18.6%로 중학생보다 다소 적었으며 남학생은 24.3%로 여학생 12.4%보다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33> 최근 6개월간 교사로부터 체벌 횟수

(단위 : %, 명)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총계
0회	16.8	32.5	25.8	25.7	38.8	32.0	20.9	34.8	28.3
1~2회	22.8	28.0	25.8	23.3	25.4	24.3	23.2	27.3	25.4
3~4회	16.4	14.5	15.3	14.9	14.1	14.5	15.8	14.3	15.0
5~6회	9.1	9.4	9.3	11.8	9.3	10.6	10.4	9.3	9.9
7회 이상	34.8	15.6	23.8	24.3	12.4	18.6	29.6	14.2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28)	(1,513)	(2,641)	(1,048)	(969)	(2,017)	(2,231)	(2,539)	(4,770)

출처 : 한국아동학회, 아동발달백서(2002).

조성남 외(2002)는 학생들이 교육현실에 대한 불만 중 체벌에 대한 불만을 지적한 고등학생은 27.4%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학교의 방침에 순응하기 보다 저항하는 청소년은 체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상의 자료를 정리해보면, 교사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원인에는 과밀 학급,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이 체벌 사용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체로 질서유지를 위해 체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은 대체로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 또는 전시 효과'를 노리게 되지만, 특정 학생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체벌은 학생들의 교칙준수나 집단적 질서유지 등의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교육적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각이나 두발 및 복장 규정위반, 교사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20-27% 학생들이 부적절한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는 앞서의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은 결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적 수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되며,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벌만능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6. 학교폭력

학교생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힘의 균형 점에서 우위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패거리, 또는 한 개인이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자극을 학생 개인이나 집단에 가함으로써 피해 학생이나 집단이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폭력에는 때리기, 차기, 피해자의 물건 빼앗기, 침뱉기,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흉기로 위협하기 등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별명 부르기, 모욕적, 인종차별적 말을 하는 것과 사이버상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본다. 이 뿐 아니라 집단에서 제외시키거나 집단으로 무시하기, 헛소문 또는 사악한 소문 퍼뜨리기,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비웃기, 바보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교내 폭력서클이 2000년 73개에서 2002년 31개로 과반수 이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고등학교의 교내 폭력써클은 대폭 감소하였지만, 중학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474개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고성혜・전명기, 2001)와 일치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빈발 학교는 중학교이

며, 전체 학교의 29.2%는 학내에 1-5개 정도의 학교폭력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피해학생이 학급별 1-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260개교의 69.2%, 일반계 고등학교 141개교의 38.3%, 실업계 고등학교 70개교의 51.4%였다. 학급별 가해학생 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이며, 1명의 인물이 중심이 된다는 경우는 중학교 31.1%, 일반계 고등학교의 20.6%, 실업계 고등학교의 17.1%이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 수가 2-3명, 특정, 불특정 다수라는 응답이 46.2%로 나타나 중학교 폭력의 확산성, 일반화가 우려되는 바이다. 생활지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 '가해 학생의 죄의식 부족(38.9%)'을 가장 우려했고, '여학생 폭력 확산(12.3%)', '폭력행위의 상습화・반복화(12.2%)',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점차 흉악화・폭력화 되는 경향(10.3%)', '폭력의 저연령화(8.3%)', '정신적 폭력의 증가(8%)' 등의 순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약 9.5%가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등학생(1학년 6.3%, 2학년 8.0%)에 비해 중학생(1학년 12.7%, 2학년 10.8%, 3학년 12.6%)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약 30% 정도의 학생은 뚜렷한 이유없이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가해 이유(중복응답)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35.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장난 삼아서'(15.5%)와 '아무런 이유없이'(15.3%)와 같은 뚜렷한 이유없이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30%에 달했다. '친구 폭행에 동조하여'(7.8%), '힘을 과시하기 위해'(7.6%)와 '친구나 또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3.2%) 등도 적지 않은 비율을 점해 학생들간의 역학관계 또한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경우도 3.9%에 달해 폭력 가해 학생의 가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로, 학교폭력 문제는 인간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잘난 척 한다거나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 신체적으로 왜소하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학생이나 다른 지방에서 살다온 학생에게 바보 같다거나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따돌림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일 뿐이며, 폭력에 관한 한 어떤 구실이나 이유

도 정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7.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 침해

변화된 요즘 세태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신변의 불안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도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듣게 되거나 폭행을 당하게 되는 등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학생지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위험은 학생들이 학교 벽 등에 욕설을 쓰거나(53.6%), 학교 홈페이지에 인식공격의 글을 올리는 것(40.9%) 등이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 집기 파손(39.9%), 타 기관에 전화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림(31.0%), 폭언 경험(25.7%), 그리고 폭행에 대한 위협성 발언(16.5%) 등을 경험하였으며,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교사도 17명(3.6%)이나 있었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한 경험은 교급별로 차이를 보여 폭행 위협 경험률은 중학교 교사(15.0%)보다 고등학교 교사(18.3%)의 경험률이 높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17.0%)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20.0%)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행 역시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률(4.2%)과 무응답(14.6%)을 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5.7%)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3.5%)보다 폭행 당한 경험률이 높았다.

한편, 학생 지도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은 중학교 교사(33.5%)보다 고등학교 교사(50.2%)가 더 많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45.7%)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52.5%)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신공격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

학생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경험률은 중학교 교사(27.3%)가 고등학교 교사(23.9%)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별로 나누어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31.4%)는 중학교 교사보다 폭언 경험이 많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는 오히려 중학교 교사보다 폭언 피해 경험률이 적었다.

<표 4-34> 학생 지도활동시 경험한 위험

(단위 : 건, %)

	사례수	백분율 (%)
	자동차나 집기 파손	
예	189	39.9
아니오	258	54.4
무응답	27	5.7
계	474	100.0
	학교 벽이나 건물에 욕설을 씀	
예	254	53.6
아니오	197	41.6
무응답	23	4.9
계	474	100.0
	신체적 폭행 경험	
예	17	3.6
아니오	411	86.7
무응답	46	9.7
계	474	100.0
	폭언 경험	
예	122	25.7
아니오	313	66.0
무응답	39	8.2
계	474	100.0
	폭행 위협성 발언	
예	78	16.5
아니오	350	73.8
무응답	46	9.7
계	474	100.0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신공격	
예	194	40.9
아니오	248	52.3
무응답	32	6.8
계	474	100.0
	타 기관 전화신고나 사이트에 글 올림	
예	147	31.0
아니오	291	61.4
무응답	36	7.6
계	474	100.0

출처 : 고성혜 외(2001).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들도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중・고등학생 6,240명 중 한번도 선생님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학생은 98.7%이고 1.3%만이 폭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을 성별,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1.0%, 일반계 고등학생은

1.5%, 실업계 고등학생은 1.7%이며, 남학생은 1.9%, 여학생은 0.7%으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행 경험이 미미하지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소년의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 감내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 사회와 청소년 인권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한 삶의 양식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노출되면서 경제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생존 차원의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 강한 보호우산 아래의 일반 청소년 중심의 삶과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때로는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사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청소년 및 장애청소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할 권리 또는 정당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가 청소년의 사회적 인권을 설명하는 한 축이라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및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할 권리가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은 소수이면서 경제적 약자로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될 권리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인권의 세부적이고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근로, 장애 및 성폭력 및 성매매 등 성적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정 및 학교 외에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제3의 사회환경으로서 근로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불평등한 취업구조는 청소년에게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인데 비해, 소수이기 때문에,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구조적이면서 복합적인 문제이다.

청소년 인권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과 그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수동적이고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균형잡힌 사고를 하는 창의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청소년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절 근로 청소년

1.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2002년 6월 현재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4,561천명으로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46.6%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와 참가율은 2,248천명과 47.9%이며, 여자의 경제활동 인구와 참가율은 2,313천명, 45.5%이다.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2,044천명을 연령별로 보면 15-1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이고 20-24세는 57.6%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하였음).

<표 5-1> 2002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청년층 인구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취업자[1]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실업률
전체 (15-29)	9,783	4,561	4,285	276	5,223	46.6	6.1
남자	4,695	2,248	2,077	170	2,447	47.9	7.6
여자	5,089	2,313	2,208	105	2,776	45.5	4.5
15-24	6,265	2,044	1,894	150	4,222	32.6	7.3
20-24	2,997	1,726	1,609	117	1,271	57.6	6.8
25-29	3,518	2,517	2,391	126	1,001	71.5	5.0

주 : 재학, 휴학 취업자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3).

한편,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 일은 1999년에 25.2일에서 23.5일로 줄어들었고, 평균 근로시간도 월 211.4시간에서 201.8시간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근무일수는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근무시간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은 월 200시간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취업 신분이 다소 불안정하고 비정규 직장이나 시간제 근무가 주종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과 20-24세 청소년의 평균 근로일수 차이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근무시간은 1999년 6시간(15-19세 215.8시간, 20-24세 209.8시간)에서 2002년에 9.5시간(15-19세 208.0시간, 20-24세 199.5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여자 청소년인 경우, 1999년 20-24세(191.4시간)가 15-19세(190.1시간) 보다 근로 시간이 길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전되어 2002년에는 15-19세 여자 청소년의 월 근로시간이 203.9시간으로 20-24세(193.4시간)보다 10.5시간이나 길었다.

<표 5-2>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 도	연령별	전 체		남 자		여 자	
		월 평 균 근 로 일	월 평 균 근로시간	월 평 균 근 로 일	월 평 균 근로시간	월 평 균 근 로 일	월 평 균 근로시간
1999	전 체	25.2	211.4	25.1	213.6	25.4	206.0
	15-19세	25.7	215.8	25.5	224.1	25.8	190.1
	20-24세	25.5	209.8	25.4	223.7	25.5	191.4
2000	전 체	24.7	208.1	24.6	211.4	24.8	200.5
	15-19세	25.0	210.1	24.9	222.0	25.0	205.9
	20-24세	24.8	205.4	24.9	220.8	24.8	199.0
2001	전 체	24.5	204.9	24.5	207.9	24.5	198.3
	15-19세	24.8	206.4	24.7	217.3	24.8	202.7
	20-24세	24.7	201.7	24.8	215.1	24.6	196.6
2002	전 체	23.5	201.8	23.5	204.3	23.7	195.9
	15-19세	24.0	208.0	24.2	216.4	23.9	203.9
	20-24세	23.7	199.5	24.0	212.3	23.6	193.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1999)의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변화 전망을 보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00-2010년 10년간 15-24세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는 남자가 816천명에서 702천명으로 114천명이 감소하고, 여자는 1,294천명에서 1,124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3>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전망

(단위 : 천명, %)

연 령		2000	2010[1]
전 체	15-17세	45(2.0)	35(2.1)
	18-19세	402(26.7)	289(24.3)
	20-21세	479(48.1)	419(49.9)
	22-24세	1,182(61.9)	1,083(62.2)
남 자	15-17세	29(2.5)	20(2.5)
	18-19세	192(25.9)	190(23.6)
	20-21세	132(42.6)	85(42.2)
	22-24세	463(55.0)	407(52.4)
여 자	15-17세	18(1.7)	15(1.7)
	18-19세	211(27.4)	98(25.7)
	20-21세	347(50.7)	334(52.3)
	22-24세	718(67.4)	676(7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999).

2. 청소년 취업의 특징

청소년 취업 관련하여 특징적인 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영국, 미국, 스웨덴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청소년은 학업[1],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표 5-4> 경제활동 참가율의 국제비교(1999년)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5-64세	63.9	72.4	64.1	73.6	67.8	71.2	78.5	76.3	77.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2000).

1) 200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8.5%이고 거의 모든 졸업생의 진학(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99.6%)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학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은 아주 소수이다(한국의 사회지표, 2002).

둘째,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직장에 국한되어 있다. 공식적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부족한 관계로 경험연구 결과 위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응답자의 34.2%에서 56.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청소년보호위원회, 2002a)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4.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전단지 돌리는 일과 음식점 서빙을 가장 많이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6.0%)이 여학생(32.4%)보다 다소 많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고생이 55.7%로 인문고생(32.4%)이나 중학생(28.6%)보다 많았는데, 해 본 일은 주로 광고전단배포(71.1%)와 음식점(25.4%)이 대부분이다.

② 참여연대의 조사(2002)에 의하면, 수도권 중・고생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5.3%(501명)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은 전단지 돌리기가 70.5%로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점 9.8%,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식당 서빙 3.5% 등으로 조사되었다.

③ 노동부(2002)의 수도권에 재학 중인 중・고생 1,7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때는 중학생이 52.1%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배포(36.8%), 일반 음식점(14%), 패스트푸드점(11%), 배달(7.7%), 주유소(5.6%), 유흥업소(4.3%) 순이었다.

3. 청소년 취업의 문제점

1) 실업률

청소년층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1998년 20.8%에서 2002년 11.1%로 대폭 감소했고 20-24세 역시 동기간 중 11.4%에서 6.3%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실업률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2002년 실업률의 성별・나이별 차이를 살펴보면, 15-29세 남자청소년의 실업률이 12.4%로 가장 높고, 20-24

세 여자 청소년이 6.5%로 가장 낮다.

<표 5-5> 청소년층 실업률

(단위 : %)

	1998	1999	20000	2001	2002
15 - 19	20.8	19.5	13.8	13.3	11.1
남자	25.1	22.4	14.5	14.4	12.4
여자	17.5	16.8	13.0	12.3	9.9
20 - 24	14.8	12.8	9.3	8.9	7.5
남자	19.4	16.0	12.1	11.5	9.3
여자	11.8	10.7	7.6	7.3	6.5
경제활동인구 전체	7.0	6.3	4.1	3.8	3.1
남자	7.8	7.2	4.7	4.3	3.5
여자	5.7	5.1	3.3	3.1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임금격차

24세 이하 청소년의 임금은 전체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의 임금은 20-24세 청소년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89.4%이고, 전연령 평균 임금(156.7%)의 55%선에 머물고 있다.

20-24세 청소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연령 평균 임금(170.1)과 19세 이하 남자 청소년 임금(89.1) 격차는 매우 큰 반면, 여자의 임금은 전연령 평균 임금(115.5)과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 임금(90.1) 격차가 남자의 경우보다 적다. 다시 말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는 적은 반면, 남자 근로자는 연령에 따른 격차가 매우 커서 10대 남자 근로자는 임금 착취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임금 구조가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여성 근로자간의 차이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표 5-6> 연령계층별 ·성별 임금격차

(단위 : %)

구 분 \ 연령계층		전연령	19세 이하	20～24세
계	'99	156.7	83.6	100.0
	'00	157.8	85.9	100.0
	'01	158.8	90.2	100.0
	'02	156.7	89.4	100.0
남자	'99	165.8	81.3	100.0
	'00	171.6	83.3	100.0
	'01	176.3	90.1	100.0
	'02	170.1	89.1	100.0
여자	'99	114.6	84.3	100.0
	'00	116.2	87.0	100.0
	'01	116.0	90.3	100.0
	'02	115.5	90.1	100.0

주 : 임금격차는『20~24세』계층의 임금을 100.0으로 하였을 때의 임금수준임.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관련 차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마인드가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다수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신분인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국적이거나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해 본다.

①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2003)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광주 실업계 고교생 454명 중 318명(70.0%)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 유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14.8%, 68명)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9.5%(43명)과 무시 8.5%(39명)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전에 안내 받은 계약조건은 48.7%(221명)의 학생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노동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하며 59.5%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해줄 기관이 없다고 답하였다.

② 참여연대(2002)

수도권 중・고생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5.3%(501명)였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중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가 23.7%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시간당 2,100원)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도 21.4%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전체의 74.1%였고, 고용주의 부당 행위에 대해 '아무 대처도 못했다'는 대답이 50.4%에 이르렀다.

<표 5-7> 청소년들이 꼽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백 4건 (80.6%)
급여 미지급	1백19건 (23.7%)
최저임금 (시간당 2천1백원 기준)미만 지급	1백 7건 (21.4%)
근무 중 부상 치료비 전액 미지급	71건 (14.2%)
야간(오후10시-오전6시)근무	58건 (11.6%)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우	39건 (7.8%)

자료 : 참여연대(2002).

③ 노동부(2002)의 실태조사

수도권에 재학 중인 중・고생 1천7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해 조사결과(노동부, 2002)에 따르면 56.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7.4%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유형은 약속한 임금보다 적음(9.6%), 임금 지급일 지연(8.4%), 지급 일도 늦고 금액도 적음(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에 1명 꼴(9.3%)로 일하는 동안 성적 농담을 듣거나 신체 접촉 등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여학생(11.2%)이 남학생(7.6%)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4.6%가 1번 이상 사업주나 상사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뒤에는 그냥 참고 일하거나(28.9%) 일을 그만둔 것(26.3%)으로 조사됐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드러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1,500원 이하가 18.9%이고, 일반 청소년의 15%, 특수 청소년의 25% 정도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 임금 체불이나 거부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학생 청소년 중 일하고 나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전 체	성 별		교 급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기타
일반집단	15.0	15.0	15.1	17.1	12.3	15.3	-
(응답자수)	(273)	(143)	(130)	(128)	(69)	(76)	-
특수집단	25.1	18.9	34.5	23.7	28.9	28.4	23.3
(응답자수)	(105)	(47)	(58)	(18)	(22)	(25)	(40)

주 : 일반집단은 학교 청소년이고 특수집단은 소년원, 학교부적응, 가출청소년임.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통계자료집, 재구성(2002).
출처 : 서문희 외(2003).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익이 침해되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주된 이유는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나 근로동의서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도덕적 경제논리 때문이며, 악의적인 노동시간 연장 또는 불인정과 열악한 근무시간 배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홍보,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장애 청소년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충분히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특별한 애정과 지원으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충분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

인이 받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초·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 뿐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교원, 시설 등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변화되고, 장애인을 위한 공적 부조도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심리적으로 차별받게 되고, 소외됨에 따라 권리는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혜택 및 재활 서비스 그리고 기본 교육마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나 여가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는 장애 청소년의 실태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전통적인 장애 범주에는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 등이 포함되지만 현재 장애 범주는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신장애 등 총 10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의 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인구학적 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 5년마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표 5-9> 성 및 연령구분별 장애 출현율

(단위 : %, 명)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0-4세	0.33	10,925	0.36	6,254	0.31	4,671
5-9세	0.84	30,925	1.00	19,286	0.67	11,639
10-14세	0.80	27,574	1.06	19,344	0.50	8,230
15-19세	0.97	35,245	1.26	23,286	0.67	11,959
전체 인구	3.09	1,449,494	3.86	890,430	2.34	559,064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장애 아동 출현률은 아동 연령별로 0-4세는 0.33, 5-9세는 0.84, 10-14세는 0.80, 15-19세는 0.97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출현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현재 장애인의 수는 대략 1,472천명으로 전 인구층의 3.09%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3

년 3월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1,340천명이다. 이 가운데 지체가 775천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분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 장애 청소년의 교육 현황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2003년 4월 현재 전국 137개의 특수학교와 3,217개의 유・초・중・고등학교 4,102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서 53,404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담당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5,234명과 특수학급 담당교원 4,212명으로 모두 9,446명이다.

2002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003년에는 특수학교 1개교가 증설되고 특수학교의 학급은 91학급 증설, 교원 수는 247명 증원된다.

<표 5-10> 특수학교 현황 (2003. 4. 1)

(단위 : 개)

설립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 립	5	156	1,214	311
공 립	45	1,177	9,550	2,156
사 립	87	1,554	13,428	2,767
계	137	2,887	24,192	5,23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3).

한편, 특수학급의 경우는 특수학급 설치교는 109개교 증가, 특수학급은 149개 학급 증설, 담당교원은 244명 증원되었다.

<표 5-11> 특수학급 현황 (2003. 4. 1)

(단위 : 개)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유 치 원	72	84	339	85
초등학교	2,430	3,119	20,288	3,217
중 학 교	601	712	4,630	723
고등학교	114	187	1,611	187
계	3,217	4,102	26,868	4,21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3).

2003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는 760개 유·초·중·고등학교의 1,579개 학급에 2,344명을 배치하고 있다.

<표 5-12>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학급 배치 현황 (2003. 4. 1)

(단위 : 개)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 치 원	101	122	143
초등학교	275	552	874
중 학 교	128	214	370
고등학교	256	691	957
계	760	1,579	2,34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3).

3. 장애 청소년의 애로 사항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주된 애로 사항은 교육 기회의 제한, 고용 기회 제한과 치료재활 미비 등에 대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장애자라고 해도 성별에 따른 실업률이나 임금 수준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열악하여 성차별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애로 사항 중에서 여기서는 교육적 차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장애 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이미경, 2003) 결과에 의하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기회의 박탈이자 교육권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데, 입학이나 전학 시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는 '가르칠 교사가 없어 곤란하다'(50.0%)거나,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실제로 받지 않는다'(50.0%)거나, '교내에서 별도로 돌봐줄 수 없다'(48.9%)거나, '장애인은 무조건 받지 않는다'(47.8%)거나,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이 곤란하다'(40.0%)는 것을 들고 있다.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학교 측의 관료적 또는 고압적인 태도'(28.7%)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21.3%) 등의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받은 차별대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4.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학교별에서는 특수 학교가 '차별이 없다'는 응답이 89.7%인 반면 일반 학교와 특수 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는 각각 65.6%, 67.3%로 차별대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의 장애 학생 차별 유형으로는 '장애 학생에 대한 불평이나 곤란 호소'(15.0%), '무관심'(10.7%), '특수학교로의 전학 권유'(8.3%) 순인 것으로 응답했다.

<표 5-13>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차별 대우

(단위 : 명, %)

		사례수	문항별 비율(%)						
			특수 학교로의 전학권유	사례요구	체벌	불평이나 곤란호소	무관심	기타	없음
전 체		300	8.3	2.0	2.3	15.0	10.7	2.0	74.0
학교별	일반학교(특/무)	93	7.5	4.3	2.2	20.4	14.0	3.2	83.1
	일반학교(특/유)	110	10.9	1.8	2.7	19.1	15.5	0.9	63.6
	특수학교	97	6.2	-	2.1	5.2	2.1	2.1	78.1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모들은 전체적으로 57.0%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만족률은 특수학교(69.1%)가 일반학교(47.3%)에 비해 20%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은 적지 않게 드러났으며,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이상에 부응하는 일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고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에게 의료혜택 및 재활치료의 부족에 관해 메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장애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완전한 평등을 목표로 장애우를 바라보는 기존의 왜곡된 인식과 편견, 동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우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3절 보호 소년

1. 소년범죄의 실태

소년범죄는 총범죄와는 달리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01년 소년범죄는 1997년도에 비하여 15.9%가 감소하였다.

<표 5-14> 총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범 죄	2,117,759 (100)	2,341,431 (110.6)	2,400,485 (113.4)	2,329,134 (110.0)	2,426,050 (114.6)
소 년 범 죄	164,182 (100)	161,277 (98.2)	150,821 (91.9)	151,176 (92.1)	138,030 (84.1)
구 성 비 율(%)	7.8	6.9	6.3	6.5	5.7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2002).

2001년 기준, 소년범 중에서 남자 소년범은 116,235명, 84.2%이고 여자 소년범은 21,795명, 15.8%로 1997년에 비해 남자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5-15>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인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1997	164,182	150,396	91.6	13,786	8.4
1998	161,277	144,907	89.9	16,370	10.1
1999	150,821	131,275	87.0	19,546	13.0
2000	151,176	131,444	86.9	19,732	13.1
2001	138,030	116,235	84.2	21,795	15.8

자료 : 대검찰청(2002).

2001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 37.0%, 재산범 24.5%, 교통사범 30.3%,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5%이며, 재산범보다 폭력범의 비율이 많고, 오토바이 폭주족과 관련있는 교통사범 역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이다.

2001년 소년범죄자의 주된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행(28.0%), 부주의(15.2%), 유흥비 마련 등 이욕 범행이 15.0%으로 나타났는데, 우발적이나 부주의에 의한 범행, 취중 호기으로 비행을 했다는 비율을 합한 수치는 48.7%로, 과반수 정도의 학생은 충동적이고 상황적인 이유로 비행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범죄 경력은 초범이 63.7%(97년 74.0%), 재범이 36.3%이며, 소년범의 재범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범죄는 전체 소년범죄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5-16>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1997	2,117,759 (100)	164,182 (100)	7.8	103,292 (100)	62.9
1998	2,341,431 (110.6)	161,277 (98.2)	6.9	99,625 (96.4)	61.8
1999	2,400,485 (113.4)	150,821 (91.9)	6.3	91,942 (89.0)	61.0
2000	2,329,134 (110.0)	151,176 (92.1)	6.5	97,056 (94.0)	64.2
2001	2,426,050 (114.6)	138,030 (84.1)	5.7	85,040 (82.3)	61.6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2002).

2001년 학생범죄는 폭력범이 40.0%로 가장 많고, 절도범(17.2%)과 강력범(2.0%)이 그 다음이다. 학생범죄의 폭력범 비율은 소년범죄와 비교해 볼 때, 약 3.0% 정도가 더 많다.

학생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범죄와 순위가 비슷하여 우발적 범행(30.1%), 부주의(18.5%), 그리고 이욕(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7>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폭 력 범		절 도 범		강 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1997	103,292	39,732	38.5	21,178	20.5	2,605	2.5	39,777	38.5
19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19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2000	97,056	38,706	39.9	20,219	20.8	2,083	2.2	36,048	37.1
2001	85,040	34,003	40.0	14,631	17.2	1,742	2.0	34,664	40.8

자료 : 대검찰청(2002).

2. 소년풍기문란사범

2001년 풍기문란사범은 239,12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8.9%가 감소하였다. 단속 내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을 정리해 보면, 음주나 흡연이 26.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싸움이나 소란이 22.0%로 2000년에 비해 9.7%가 증가했고, 미미한 비율이지만 불량만화 등 소지나 남녀혼숙 등이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풍기문란 사범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면, 98% 이상이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를 취하고 즉심은 0.3% 정도 된다.

<표 5-18> 소년풍기문란사범 단속 처리상황

(단위 : 명)

구 분	계	단 속							처 리			상담카드 작성
		불량만화 음화소지	남녀 혼숙	음주 흡연	환각성 접착제 흡입소지	싸움 소란	흉기 소지	기타	즉심	보호자 인계	이첩 통보	
2000	391,465	482	1,089	126,984	436	48,292	423	213,759	261	383,753	7,451	5,704
2001	239,125	1,783	1,114	63,141	355	52,620	350	119,762	742	235,799	2,584	2,849

자료 : 경찰청(2002).

3. 범죄 예방 및 비행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단계에서부터 쉼터 운영 및 선도 위주의 사법처리과정(기소유예・보호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예방을 위한 활동이 펼쳐가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1) 경찰청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애로사항을 직접 면접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들어주고 문제의 사전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단체에 청소년 고충상담실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5-19> 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단위 : 회)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담횟수	16,739	12,431	15,042	15,989	18,827	14,514

자료 : 경찰청(2002).

또한 기존의 사랑의 교실과 범죄예방교실을 통합하여 청소년 교실로 운영해 오던 것을 사랑의 교실은 범죄·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일 프로그램으로, 상담실은 우범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관과의 1:1 상담활동을 하는 상담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교실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대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 검찰청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범법 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 환경, 개성, 범행유발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활용하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은 6,397명이 선도유예가 되었는데 소년범죄자 수가 줄어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5-2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소 년 범 죄	164,182	161,277	150,821	151,176	138,030
선 도 유 예	8,653	9,182	7,076	7,045	6,397

자료 : 대검찰청(2002).

2001년 소년범죄의 기소유예율은 39.4%인데 반해 학생범죄의 기소유예율은 46.6%로 소년범죄보다 7.2%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부모나 학교당국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21>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

연 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소 중 지	기 타	
1997	36.8	14.1	22.8	48.0	1.9	38.1	3.3	4.7	15.2
1998	35.1	13.6	21.6	50.8	2.1	39.2	3.4	6.2	14.0
1999	33.0	10.6	22.4	51.3	2.5	38.8	3.1	6.9	15.7
2000	30.0	8.7	21.3	53.3	2.5	41.2	2.5	7.1	16.7
2001	32.3	7.5	24.8	51.8	3.0	39.4	2.8	6.6	15.9

자료 : 대검찰청(2002).

3)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 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2> 소년보호사건 처리 상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찰청송치	기타
		소계	1호처분	2호처분	3호처분	4호처분	5호처분	6호처분	7호처분				
1997	39,639 (100)	37,559 (94.8)	33,504 (84.5)	[12,595]	[14,017]	653 (1.7)	43 (0.1)	2,214 (5.6)	1,145 (2.9)	650 (1.6)	1,304 (3.3)	59 (0.1)	67 (0.2)
1998	39,300 (100)	37,081 (94.3)	33,139 (84.3)	[12,719]	[13,712]	851 (2.2)	10 (0.0)	1,884 (4.8)	1,197 (3.0)	897 (2.3)	1,250 (3.2)	26 (0.1)	46 (0.1)
1999	36,460 (100)	32,348 (88.7)	28,599 (78.4)	[10,677]	[11,234]	920 (2.5)	14 (0.0)	1,621 (4.5)	1,194 (3.3)	1,848 (5.1)	2,118 (5.8)	106 (0.3)	40 (0.1)
2000	35,342 (100)	32,270 (91.3)	28,572 (80.8)	[10,783]	[10,404]	896 (2.5)	10 (0.0)	1,502 (4.3)	1,290 (3.7)	1,322 (3.7)	1,512 (4.3)	93 (0.3)	145 (0.4)
2001	30,496 (100)	27,314 (89.6)	6,057 (19.9)	2 [8,816] (28.9)	6 [8,975] (29.4)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97 (0.3)	32 (0.1)

주 : 2호 및 3호처분 [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자료 : 법무부(2002).

2001년의 경우, 소년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 사건 중 78.2%를 보호자 관리나 보호관찰처분(1-3호)을 주로 내렸으며, 소년원 송치(6호・7호)는 9.0%이다. 보호관찰처분이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교화 개선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내 처우이다. 이것은 선행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부분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관찰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도 한다.

4. 보호 소년의 인권침해 현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비행 행위를 한 청소년이라고 해도 이들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비행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활동과 보호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사회의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있다.

비행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오영근(2002)의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보호 소년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경험

폭언(43.46%)과 구타(40.49%)가 가장 많아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인권이 손상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경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내용 / 인원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평한 사건 처리	비인간적 대우
N (405)	108	164	176	102	77
% (100)	26.67	40.49	43.46	25.19	19.01

②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폭언(21.98%)과 구타(12.10%) 및 협박(9.38%)이 가장 많다.

<표 5-24>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내용 / 인원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
N (405)	38	49	89	47	51
% (100)	9.38	12.10	21.98	11.60	12.56

③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억울한 일 들은 폭언이나 폭행(7.41%)을 당해 본 경험이 있으며,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26.17%)거나 충분히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다(15.06%)는 경우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인원 / 내용	폭언이나 폭행	하고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나를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	너무나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죄가 없는데 유죄라고 했다	비인간적 대우
N (405)	30	106	61	73	21	16
% (100)	7.41	25.17	15.06	18.02	5.19	3.95

④ 소년원에서 피해 경험

구타(13.58%), 폭언(8.40%) 및 협박(3.95%)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를 겪은 경험이 가장 많았다.

<표 5-26> 소년원에서 경험한 인권침해행위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평한 차별대우	다른학생 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비인간적 대우
N (405)	16	55	34	30	14	19
% (100)	3.95	13.58	8.40	7.41	3.46	4.69

제4절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

2003년에 유니세프는 아동 착취 종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신매매를 멈추자」(Stop the Traffi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니세프는 영국을 지목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동 매매에 관련된 어떤 형태의 행위도 일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을 위한 아동 매매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로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1백20만명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 국무부가 2001년 처음으로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세계 82개국 중 한국을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판정하고, 한국을 "인신매매의 원천이자 통과국" 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주로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한

나라라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내용 중에서 자신의 신체를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가장 기초가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에 관련된 인권 유린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신분 그리고 사회적 미경험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개인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범죄이며 그 후유증이 심하고 오래간다는 점에서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성착취

지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성매매 집결업소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 업주들에게 감금당한 채 잔혹하게 성적 착취를 당해 오던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재확인하였다.

지난 10년간(1991~2000년)간 국가 사법당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신매매 관련범죄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도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50%이상 꾸준히 증가된 것에 비해, 약취유인(형법)은 오히려 1995년까지는 절반 이하로 격감되거나 이후 증감을 반복한 후 2000년에는 증감지수가 108로서 1991년도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형법으로 규율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5%가,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된 성폭력 범죄는 94년이래 7년 동안 약 2배 반이나 증가했다(김은경, 2002).

<표 5-27> 지난 10년간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

(단위 : 건수,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범죄	1233383 (100.0)	1245215 (101.0)	1359094 (110.2)	1375564 (111.5)	1399085 (113.4)	1494846 (121.2)	1588613 (128.8)	1765887 (143.2)	1732522 (140.5)	1867882 (151.4)
성폭력 (형법)	5175 (100.0)	3756 (72.6)	7051 (136.3)	6169 (119.2)	4912 (94.9)	5688 (109.9)	5665 (109.5)	6016 (116.3)	6410 (123.9)	6982 (134.9)
성폭력 (특별법)				1246 (100.0)	1262 (101.3)	1470 (118.0)	1455 (116.8)	1870 (150.1)	2420 (194.2)	3207 (257.4)
약취유인 (형법)	281 (100.0)	225 (80.1)	280 (99.6)	170 (60.5)	127 (45.2)	155 (55.2)	246 (87.5)	202 (71.9)	175 (62.3)	305 (108.5)
직업안정	845 (100.0)	419 (49.1)	939 (110.0)	236 (27.6)	507 (59.4)	1179 (138.1)	880 (103.0)	1089 (127.5)	1040 (121.8)	1155 (135.2)
출입국				21 (100.0)	51 (242.9)	176 (838.1)	297 (1414.3)	423 (2014.3)	334 (1590.5)	438 (2085.7)
윤락행위	681 (100.0)	433 (63.6)	608 (89.3)	496 (72.8)	430 (63.1)	675 (99.1)	975 (143.2)	1372 (201.5)	2085 (306.2)	2822 (414.4)

주 : %는 91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지수임.
자료 : 범죄분석.
출처 : 김은경(2002).

2002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1년도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행위는 12,062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다. 한편 법부무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수는 아동 및 미성년 피해자수를 매춘 41명, 강간 등 2,205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5-28>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수

(단위 : 명)

구분	1999			2000			2001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매 춘	4	61	65	1	54	55	2	39	41
강간등	123	2,876	2,999	92	1,056	1,148	72	2,133	2,205
전 체	127	2,937	3,064	93	1,110	1,203	74	2,172	2,246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출처 : 서문희 외(2003).

1999년에서 2001년의 3년 간 인신매매사건 및 윤락행위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총 647건을 내용 분석한 김은경(2002)의 연구에서도 약취유인사건의 주된 피해자는 여자 청소년(66.2%)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8.7세에 나타나, 대부분 10대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5-29> 사건 죄명유형별 피해 규모 및 대상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약취유인	윤락행위	직업안정	청소년성보호	소 계
총피해인원	133명	116명	75명	184명	508명
여자청소년	(66.2)	(12.7)	(22.7)	(98.4)	(59.4)
남자청소년	-	-	-	(1.6)	(0.6)
성인여자	(33.8)	(87.3)	(77.3)	-	(40.0)
사건당 평균인원 (해당사례당 인원)	2.2	0.5 (3.1)	1.3 (3.4)	1.5	1.1 (2.1)

출처 : 김은경(2002).

앞서의 통계자료는 인신매매 사건의 주요 피해 대상자는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출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특히 인신매매에 의해 티켓다방으로의 유입률이 높다. '다방'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므로, 10대의 고용과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업종이다. 티켓다방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당장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10대 소년들을 유인하여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티켓비' 등 성 착취적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까지 알선하고 있다.

김은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착취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67.4%가 강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매매단계 이후에도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강제 상황이라는 응답률이 65.1%였다. 인신매매과정 중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빚 부담 때문이며(38.9%), 감금 상태이기 때문(20.1%)에 탈출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이들 피해 여성들이 강제적 벌금 등의 형태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상시적인 감시와 폭력,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인권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0>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인신매매과정	매매단계이후
강제상황	감금상태여서	29(20.1)	28(25.7)
	보복/폭력의 위협 때문에	12(8.3)	13(11.9)
	빚부담 때문에	56(38.9)	30(27.5)
	소 계	97(67.4)	71(65.1)
순응적 태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함	23(16.0)	4(3.7)
	필요를 느끼지 않음	17(11.8)	22(20.2)
	집에 돌아가기 두려워서	6(4.2)	6(5.5)
	자포자기	1(0.7)	6(5.5)
	소 계	47(32.6)	34(31.2)
합 계		144(100.0)	109(100.0)

출처 : 김은경(2002).

성착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선불금 때문에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58.8%), 도망가다 붙잡힐까봐 23.5%, 감시가 심해서 11.8%, 빚이 남아있기 때문 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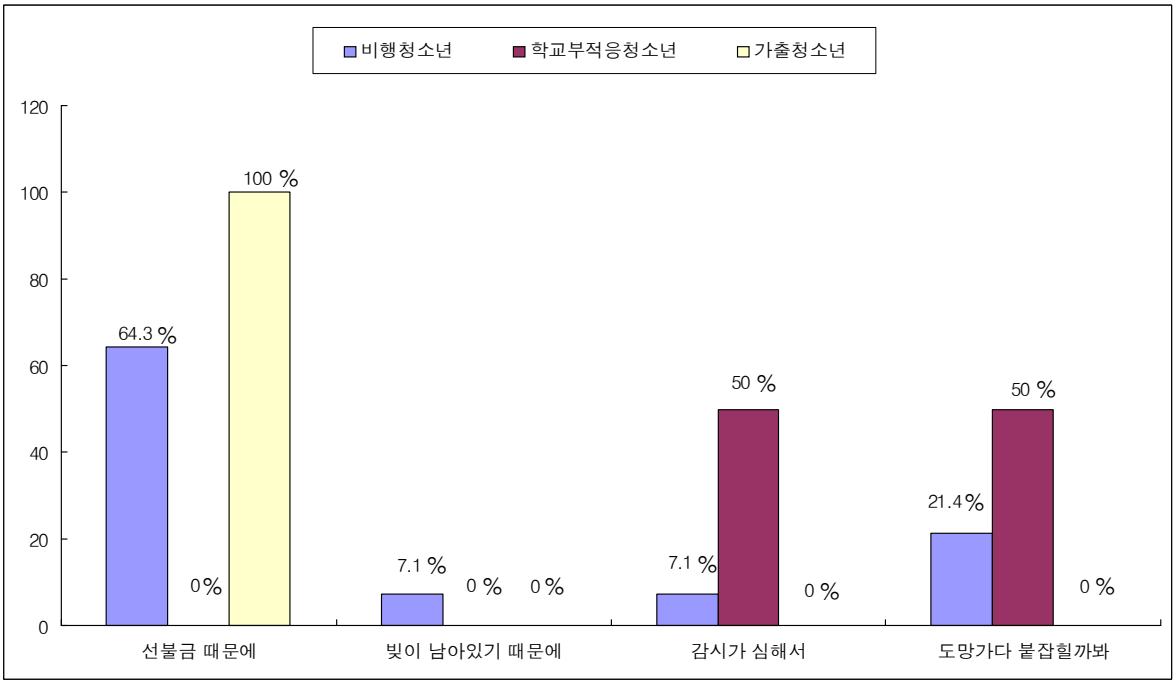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이는 특수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출청소년의 경우 100%가 선불금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64.3%가 선불금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도망가다 붙잡힐까봐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응답은 21.4%였다. 이는 청소년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이후에 청소년은 시간이 갈수록 빚에 묶이게 되며, 다른 매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친한 친구의 업소 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약 15%안팎의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업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약 45% 안팎의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업소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2> 친구의 업소 취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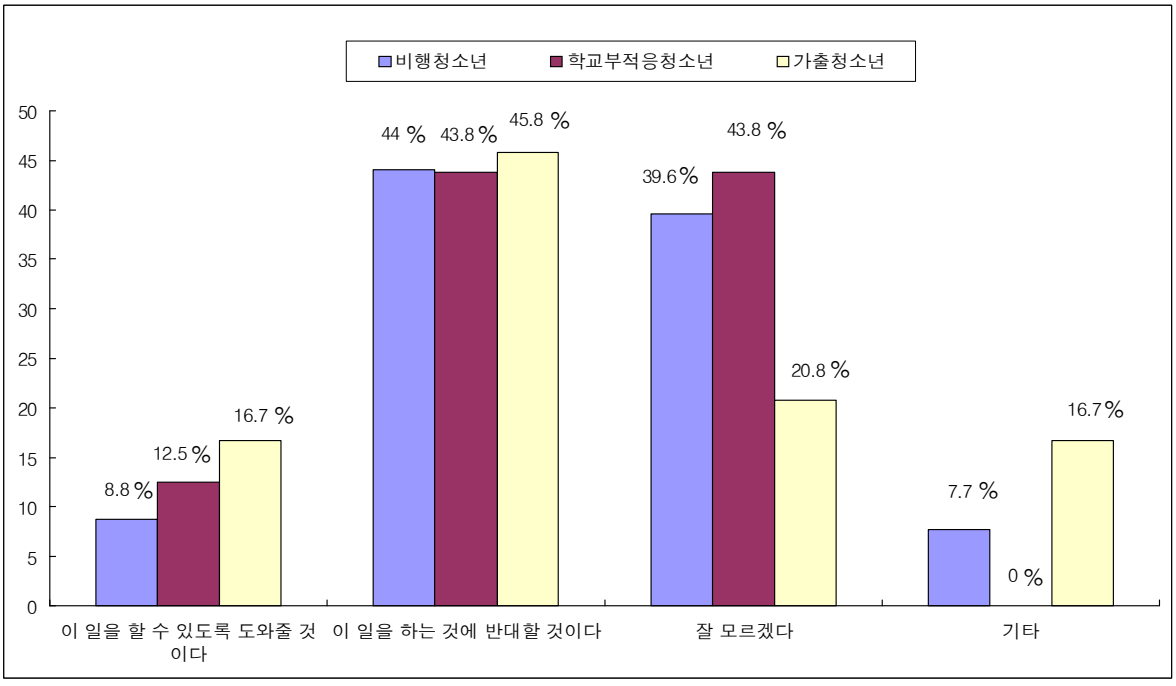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2. 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02년 한해 동안 신고된 상담건수 중 83.8%인 2,961건(4,264회)

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다. 이는 2001년 2,869건(4,161회)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다. 이 외에 신고된 상담 내용은 스토킹 피해 상담 139건(155회), 기타(성관련, 혼인빙자, 기타 문의) 433건(458회)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55.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청소년(19.3%), 어린이(15.6%), 유아(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0.4%로 가장 많고, 강간(31.8%), 성희롱(16.2%), 특수강간(5.9%), 강간미수(3%) 순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 77%, 모르는 사람 19.3%, 미상 3.7%으로 나타나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성 및 동성 친구 이외의 타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일반 청소년의 0.8%, 특수집단 청소년의 4.3%로 나타났다.

<표 5-31>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교급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기타
일반집단	0.8	0.9	0.7	0.6	0.9	0.8	-
(응답자수)	(6,231)	(2,919)	(2,993)	(2,869)	(2,034)	(956)	-
특수집단	4.3	0.2	14.1	1.2	1.0	2.5	8.5
(응답자수)	(1,009)	(651)	(350)	(192)	(135)	(190)	(472)

주 : 일반집단은 학교 청소년이고 특수집단은 소년원, 학교부적응 및 가출청소년임.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한편 인터넷을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 청소년은 17.7%였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23.3%)이 남자 청소년(12.2%)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2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반계 고등학교 18.6%, 중학생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상의 성폭력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폭력은 무책임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채 발생되며, 또한 사이버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포성도 높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므로, 사이버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5-32> 인터넷 성폭력 피해 경험

			전 체	성 별		교 급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터넷 성폭력	경험없음	빈도	5054	2670	2340.	2519	1711	780
		전체 %	82.3	87.8	74.7	84.0	81.4	78.6
	지금까지 1-2번	빈도	594	184	406	257	231	103
		전체 %	9.7	6.0	13.3	8.6	11.0	10.4
	한달에 1-2번	빈도	233	83	150	86	81	66
		전체 %	3.8	2.7	4.9	2.9	3.9	6.7
	일주일에 1-2번	빈도	114	36	77	58	37	18
		전체 %	1.9	1.2	2.5	1.9	1.8	1.8
	일주일에 3-4번	빈도	60	16	44	38	11	11
		전체 %	1.3	.5	1.4	1.3	.5	1.1
	거의 매일	빈도	89	53	35	42	32	14
		전체 %	1.4	1.7	1.1	1.4	1.5	1.4
전 체		빈도	6144	3042	3052	3000	2103	992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156.143^{***}$		$x^2 = 46.333^{***}$		

***p<.001.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서울시립아동연구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등에 의뢰된 만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상담 300사례를 분석한 강은영(2000)의 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가장 많이 호소한 후유증은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특히 공포, 불안, 강박이 가장 많고 우울, 죄의식, 분노, 악몽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당한 후의 신체적 후유증은 질 및 처녀막 손상, 성기염증 및 통증, 항문 상해 등인데 피해가 장기화되면 임신, 낙태, 불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심각하다. 성적 후유증의 경우는 자위행위, 성적 문란, 성 혐오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학습거부 및 무단 결석, 대인 기피에서부터 장기화되면 가출, 매춘, 마약, 성범죄화 등 심각한 형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출-매춘-알코올 문제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 후유증이라는 사실이다.

<표 5-33> 성학대 후유증

(단위 : 명, %)

		성기삽입	항문・구강성교 손가락 삽입	성기접촉 드라이성교
심리적 후유증	악몽, 불면, 야뇨, 유뇨	4	3	5
	분노, 증오	8	1	4
	우울	10	4	2
	공포, 불안, 강박	17	18	13
	퇴행, 회피	2	5	1
	죄의식	6	5	3
	무기력, 자포자기	6	2	1
	신경쇠약, 정신분열	7	3	1
	실어증, 말더듬		2	
	자살시도	1		
	계	61(35.9)	33(47.1)	30(41.7)
신체적 후유증	질손상 / 처녀막손상	14	3	1
	임신, 낙태, 불임	2		
	성병			
	항문상해		4	2
	복통, 두통, 기타통증	1	2	2
	성기염증, 통증, 이상	1	8	6
	기타상해			3
	계	66(38.8)	17(24.3)	14(19.4)
성적 후유증	자위행위	5	6	12
	성적놀이	1	1	1
	성공포 및 혐오	7	3	2
	성적호기심, 성적문란	4		4
	계	17(10.0)	10(14.3)	19(26.4)
사회적 후유증	학습거부, 무단결석	5	4	2
	가출	8		
	대인기피, 사회활동기피	9	5	5
	매춘	2		
	마약	2	1	1
	다른 아동을 성학대함			1
	계	26(15.3)	10(14.3)	9(12.5)
총계		170(100.0)	70(100.0)	72(100.0)

출처 : 강은영(2000).

3. 성매매

한국교회여성연합회(2003년)의 20-60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의 법적 허용여부에 대해 41.6%가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17.7%가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하여 10명 중 6명 정도가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은 41.1%이며, 조사대상자의 25.3%는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일 뿐 아니라 직업의 하나로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어 이미 하나의 문화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속설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성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며, 합의를 통한 거래라는 생각으로 죄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죄의식이나 인권의식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이 적지 않게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성매매가 확산되어 가면서 일반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은 성매매 상황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1)에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14.4%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일반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3.5%로 나타나 앞서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성매매 제의를 받아본 학생 중 여학생이 4/5, 남학생이 1/5정도이고, 실업계 고등학생(18.3%)이 중학생(12.9%)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1.9%)보다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비율이 많았다. 한편 성매매 제안을 받아 본 경험은 특수집단 청소년은 23.3%로 나타나 학생 청소년에 비해 성매매 제의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55.3%로 남자청소년(8.9%)보다 훨씬 많았으며, 조사대상별로는 가출청소년이 35.6%로 가장 많고, 소년원 청소년(24.3%), 학교부적응 청소년(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4>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일반 청소년)

			전체	성별		교급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	예	빈도	819	154	663	391	245	174
		전체 %	13.5	5.1	21.5	12.9	11.9	18.3
	아니오	빈도	5270	2844	2415	2630	1807	778
		전체 %	86.5	94.9	78.5	87.1	88.1	81.7
전체		빈도	6089	2998	3078	3021	2052	952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51.116$ ***		$x^2=23.755$ ***		

***p<.001.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표 5-35>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특수집단 청소년)

			전체	성별		조사대상		
				남	여	소년원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가출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	예	빈도	145	38	105	72	20	53
		전체 %	23.3	8.9	55.3	24.3	11.3	35.6
	아니오	빈도	477	38.9	85	224	157	96
		전체 %	76.7	91.1	44.7	75.7	88.7	64.4
	전체	빈도	622	427	190	296	177	149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58.749$ ***		$x^2=26.981$ ***		

***p<.001.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 청소년은 성매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성인과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다. 소수 청소년의 태도이지만 어른과 '성관계 없이 돈을 받고 데이트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남학생은 7.1%, 여학생은 4.2%이고, '성인과 성매매를 해도 무방하다' 중학생은 4.7%, 일반계 고등학생 3.8%, 실업계 고등학생 4.3%로 나타나 일부 청소년의 성 의식은 우려할 만하다.

성매매 경험률은 일반 청소년은 0.7%인데 반해 특수집단 청소년은 8.2%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의 경험률(21.5%)이 남자 청소년(2.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a).

<표 5-36> 성매매 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교급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기타
일반집단	0.7	1.1	0.2	0.6	0.9	0.3	-
(응답자수)	(6,231)	(2,919)	(2,993)	(2,869)	(2,034)	(956)	-
특수집단	8.2	2.8	21.5	3.0	10.3	6.8	12.0
(응답자수)	(1,009)	(651)	(350)	(192)	(135)	(190)	(472)

주 : 일반집단은 학교 청소년이고 특수집단은 소년원, 학교부적응 및 가출청소년임.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첫 성매매 연령은 16세가 10.0%, 17세 이상이 20.0%로 중2와 고1 때가 성매매 위험시기로 볼 수 있다.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의 조사(2000, 2001)결과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대부분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자료에 나타난 성매매 청소년의 연령은 15세 이하가 1차(12세 이하 30.6%, 13-15세 26.9%), 2차(12세 이하 25.7%, 13-15세 32.9%)에 비해 4차 공개(12세 이하 25.1%, 13-15세 33.9%)에서 다소 늘어 성매매 청소년의 연소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은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폐해도 적지 않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후 아무런 신체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는 45.7%인 반면, 항문이나 성기의 상처가 있었다는 경우는 20.0%, 성병 20.0%, 임신이나 출산이 14.3% 등 54.3%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인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성매매 청소년은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큰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유아기의 애착 형성이 불완전하고, 아동학대 경험, 이혼 가정에서의 양육 경험 등 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할 기회가 부족하며, 해결해야 할 가족내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소형 성매매에 연관된 청소년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각종 벌금 제도, 빚,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인한 모멸감, 낙태 및 성관련 질환, 손님들의 변태 행위

요구와 손님과 업주로부터의 위협과 폭력, 단속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어, 피해의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b).

이상, 성매매나 성폭력 등에 대한 일부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의식이 청소년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가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의 결과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심하게 앓을 수 있으며, 자유와 자율, 안전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우리 청소년이 성적 착취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된다.

제6장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청소년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견해를 표명하며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능동적 권리의 소유자 내지 행사자로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도 주체적인 자신의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이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 실현의 배경인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청소년 인권교육의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생 1,184명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존중도를 조사한 결과(정회욱 외, 2000), 청소년 자유권이 가장 존중되는 곳은 가정이며, 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사회에 비해서 학교에서는 특히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권리 중 보호권의 존중도 역시 학교가 가정이나 사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거부할 권리,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처벌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복지권의 존중도는 가정이 학교나 사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의 경험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등은 학교, 사회보다 가정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중・고등학생의 64.2%는 학교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곳이며, 사회는 19.6%, 가정 8.8%로 나타났다. 학교를 지적한 학생은 고등학생(70.4%)이 중학생(56.4%)보다 많았고 남학생(70.5%)이 여학생(58.3%)보다 많았다. 학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권리는 복장, 두발(20.1%), 의견 무시(5.7%), 체벌(3.4%) 등이며 가정에서 침해되는 권리

로는 의견 무시(8.8%), 사생활 침해(7.8%), 중요 의사결정 시 배제되는 것(3.4%)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요, 또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법에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조차도 양과 질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미약한 현실이다.

교사의 인권의식을 다룬 한 연구(심상보 외, 2002)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교사는 38.1%이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은 83.9%나 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라 할지라도 인권 관련 체계적인 연수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는 7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빈약한 인권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권교육의 현실이다.

가정에서 맞고 자라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학교나 사회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이 되기 쉽다. 또한, 사회에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은 아무런 의식 없이 부당한 차별을 감수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의 권리를 유보하도록 요구받거나 교사나 학교의 일방적인 기준과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의 인권은 경시되거나 박탈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학교가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가정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남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자기 전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성별·연령 등에 의한 전통적인 차별 및 특정 교육관의 강요와 같이 교권이 침해받는다면, 그 어떤 교사도 충분히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절 불안전한 사회

안전에 대한 권리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각종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전감을 느끼고자 하는 생존 차원에서 요구되는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지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서 알 수 있는데, 2001년 기준 15-19세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교통, 건축물 및 치안, 식품 모두 대체로 10% 정도로 나타났다. 이 빈도분포는 1997년에 비해 안전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교통			식품			건축물 및 시설물			치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1997>												
15～19세	6.7	29.8	63.4	10.4	45.5	44.1	4.8	28.5	66.8	7.4	39.0	53.5
20～29세	4.4	28.4	67.1	8.3	43.6	48.0	3.9	25.9	70.2	6.1	39.4	54.5
<2001>												
15～19세	10.0	44.4	45.6	10.7	48.0	41.3	10.4	49.3	40.4	10.4	45.1	44.4
20～29세	7.2	41.2	51.6	8.1	46.4	45.5	7.0	46.2	46.9	7.4	41.6	51.0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밤길 다니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지각한 15-19세 청소년은 1997년의 경우 52.3%인데 2001년에는 57.8%는 안전하다고 지각했다.

<표 6-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단위 : %)

	없다	있다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			
			가로등 없어서	우범지역 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1997>						
15～19세	47.7	52.3	-	-	-	-
20～29세	53.3	46.7	-	-	-	-
<2001>						
15～19세	42.2	57.8	31.6	11.8	54.9	1.7
20～29세	45.1	54.9	32.0	12.0	54.6	1.4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전화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15-19세 청소년은 1997년의 경우 24.4%에서 2001년에는 31.4%로 증가하여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화폭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주로 장난 전화와 음란성, 장난전화가 많았다.

<표 6-3> 전화폭력 경험여부(복수응답)

(단위 : %)

	없다	있다	공갈협박	음란성	장난	공갈협박・음란	공갈협박・장난	음란성・장난	공갈협박・장난・음란성
<1997>									
15～19세	75.6	24.4	-	6.0	-	-	15.3	-	3.1
20～29세	72.6	27.4	-	10.5	-	-	12.7	-	4.2
<2001>									
15～19세	68.6	31.4	0.4	2.1	24.5	0.1	0.3	3.5	0.6
20～29세	70.3	29.7	0.7	3.8	19.8	0.1	0.4	4.3	0.6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15-19세 청소년은 1991년의 경우 60.3%에서 1997년 58.3%, 2001년에는 57.7%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6-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1991			1997			2001		
	느낌	보통	느끼지 못함	느낌	보통	느끼지 못함	느낌	보통	느끼지 못함
15～19세	60.3	21.4	18.3	58.3	23.9	17.7	57.7	26.6	15.7
20～29세	62.2	20.2	17.6	59.7	23.1	17.2	58.6	26.8	14.6
30～39세	63.9	18.7	17.3	64.1	20.7	15.1	62.1	25.3	12.5
40～49세	59.2	19.5	21.3	59.3	22.1	18.7	59.3	25.9	14.7
50～59세	49.8	20.2	30.0	53.5	24.1	22.4	53.9	26.5	19.6
60세이상	39.9	20.5	39.6	41.6	24.3	34.1	42.9	26.2	30.9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선진국의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대로 인한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0만명당 0.8명으로 중간 정도지만 학대나 교통사고・화재 등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각종 사고로 인한 어린이 상해 사고사 비율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안전한 스웨덴의 5배이며 2위를 차지한 멕시코(10만명당 19.8명)와도 큰

격차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포르투갈이 10만 명당 3.7명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선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포르투갈에 이어 멕시코 3명, 미국 2.4명이 뒤를 이었고 스페인은 0.1명,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0.2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소속 27개국에서 매년 15세 이하 어린이 3500여명이 육체적 학대와 무관심으로 숨져가고 있으며, 질병이 아닌 학대나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는 2만여명에 이른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자료 역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지만, 1997년에 비해 10대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안전도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 안전성 관련 경험적 자료는 사회 전반과 학교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다루고 있다.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b)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 학생의 20.9%는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불량 써클 가입을 강요당한 적이 있으며, 43.0%는 교내에서 학생간 폭력이 발생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2.5%는 주위의 불량 학생들이 학생의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량 써클 가입 강요 경험률은 중학생(20.5%)과 인문계 고등학생(18.2%)의 경우 비슷한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24.4%)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학교나 학교 외부의 환경은 결코 안전한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같은 시기에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학교환경에 국한시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b)에서, 교내 환경 중 학생들이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폭언이고(65.4%), 교내에서의 도난(63.7%)에 이어 교사의 체벌(60.6%)을 들었다. 응답 학생의 8%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5% 정도는 학교에 결석하거나 괴롭히는 학생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이나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을 당할 위험성이 높은 때와 장소는 방과 후 친구들과 주로 노는 장소라고 응답한 학생이 35.8%로 가장 많으며, 하교시 길거리(23.1%), 방과 후 학원이나 독서실 주변(21.3%)의 순서로 나타났다. 돈을 뺏길 위험이 가장 많은 시공간 역시 폭력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경

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1년에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하다는 비율이 1.5%이고, 불안한 편이라는 비율이 8.0%로 나타나 2000년의 동향과 유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1.8%는 우리 사회가 매우 안전하며, 21.4%는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교급별로 볼 때, 안전하다는 비율은 초등학생 36.5%, 중학생 20.6%, 고등학생 11.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고 지각했다. 성별로도 차이를 보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안전하다는 인식률이 낮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1)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폭력이나 학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비율이 14.6%, 보장되어 있는 편이라는 비율이 38.4%인 반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비율이 9.3%,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비율이 36.5%로 45.8%의 청소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표 6-5> 폭력, 학대,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단위 : 빈도 수, %)

		매우 많이 보장	보장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않음	무응답	전체
전 체		149(14.6)	392(38.4)	373(36.5)	95(9.3)	12(1.2)	1021(100.0)
성별	남 자	80(15.7)	202(39.5)	167(32.7)	55(10.8)	7(1.4)	511(100.0)
	여 자	69(13.5)	190(37.3)	206(40.4)	40(7.8)	5(1.0)	510(100.0)
연령별	13~15	104(20.2)	193(37.4)	163(31.6)	53(10.3)	3(0.6)	516(100.0)
	16~18	45(9.0)	197(39.4)	207(41.4)	42(8.4)	9(1.8)	500(100.0)

출처 : 윤철경 등(2000).

학교폭력은 물론, 감전 사고나 추락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42.2%이고 초등학생은 55.2%, 중학생은 45.5%, 고등학생은 24.5%였다. 안전교육 이수율은 학년이나 교급별로 차이를 보

여 어린 학생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았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큰 고등학생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했다.

<표 6-6> 1년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아 본 비율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모르겠다	계 (수)
전체	42.2	51.5	6.3	100.0(1,015)
성별				
남	41.6	52.7	5.6	100.0(497)
여	42.7	50.4	6.9	100.0(518)
교급별				
초	55.2	36.5	8.3	100.0(348)
중	45.5	48.1	6.4	100.0(345)
고	24.5	71.4	4.0	100.0(322)
지역별				
대도시	41.6	54.5	3.9	100.0(363)
중・소도시	43.6	50.2	6.2	100.0(468)
읍・면	39.7	48.9	11.4	100.0(184)

자료 : 아동의 학교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화조사(2003).

이상 경험적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물론 학교 주변 환경 역시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안, 식품, 폭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협하므로 안전한 사회 유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의 노력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격권 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 바 있다. 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미 수준과 내용이 정해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없고, 교육 재정의 만성적 부족에서 오는 기본 여건의 부실로 여전히 낙후된 학교 설비,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다수 학급에서 질서와 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 집단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과도한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하에 학교교육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단지 학벌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면서 교육의 다양성, 또는 다양한 능력의 계발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학생은 학습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고되는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입시 대비수업, 보충교재 위주의 수업, 무기력하고 성의 없는 수업, 준비성 없는 형식적인 실험, 실습 등을 하는 것, 교사의 자질 부족에서 비롯되는 수업의 부실 사례, 학교 관리자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되는 교육과정의 편파적 운영, 선택 과목의 제한, 강제적 교과외 수업, 자율학습 시간의 진도 나가기, 교육 여건 부족에 따른 교수 학습의 형식화, 학교 이익우선주의에 근거한 편파적 진로지도, 교육행정기관의 일방적 행정지시에 의한 학생 동원 등을 들 수 있다(이수광, 2000).

청소년 인권 보장과 실천을 위해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권리 주장과 더불어 이에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하도록 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소년 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회욱 외, 2000).

청소년 인권에 대한 현안 문제들에 대응하여, 청소년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인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따르는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신의 책임 의식 및 준법 의식을 보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에 대해 94.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16-18세(96.2%)의 경우 13-15세(91.8%) 보다 책임의식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법이라도 고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 청소년이(43.4%)이 여자 청소년(34.9%)보다 동의율이 높고 16-18세 청소년이(41.9%) 13-15세 청소년(35.2%)

보다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윤철경 외, 2000).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며,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유해행위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인권보호 실태와 심각성을 가시화하고 청소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교육과 문화활동의 균형,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의 공동 대처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은영(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2002). 경찰백서.

고성혜・이완수・정진희・전숙영(2003). 2003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흡연실태 조사.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_____・전명기(2001). 생활지도 교사가 본 학교폭력,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2003). 특수교육연차보고서.

_____・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연보.

관계부처합동(2003). 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권두승・조아미(1996). 청소년 사회교육 기관 유형별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만족도와 직전 경험 일치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5호.

길은배(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광웅(2000). 방과 후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8.

김문섭(2000). 청소년욕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지도방법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성재(2001). 참여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편. 부패추방과 참여구축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 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운삼(1997). 청소년 자살 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1999). 교사체벌과 학생인권. 학생인권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_____(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휘(2001). 위기에 처한 청소년지도의 이론과 실제. 민지사.

김혜숙・김정래・고전(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노동부(199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_____(200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_____(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_____(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보고서.
문화관광부(2003). 2002년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200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_____(2002).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 보건의식행태편.
서문희 외 (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교육청(2002). 사랑이 있는 학교를 만듭시다.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2003). 중등 상담・생활지도 직무연수.
심성보・이미식・이일권・전창완・공외정(2002). 교사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심영희 외(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안황권(1999)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논집 제13집.
오영근(2002)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오영재・박경숙・조선화(2001). 청소년 복지론. 도서출판 양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 사람생각.
윤철경・전경숙・김경준・최원기・주동범(2000). 새천년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안경옥(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용교(1999). 청소년인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평,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한국청소년학회.
_____ 외 (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 외 (2001).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_____・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원덕(2002).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 과제. 2002년 제3차 연세경제포럼.
이혜연 외(2001). 소외 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 연구.
임영식・오세진(1999). 청소년 자살과 예방. 중앙대 사회과학연구 12.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a).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_____(2000b). 학교환경의 유해성 인식 조사.
_____(2001). 학교폭력 및 유해매체 접촉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장혜경 외 (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전영실(2000). 피학대아동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회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성남 외(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집문당.
조은 외(2000).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주희종・이명숙・박병식・이백철(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천진호(2002).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_____(2001). 청소년보호와 국제인권체제 연구.
_____(2002a). 2002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보고서.
_____(2002b).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_____(2002c). 청소년보호백서.
최원기(2002). 청소년자살.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_____(2002a). 사망원인통계연보.
_____(2002b). 한국의 사회지표.
_____(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_____(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월간 가정상담 2001년 6월호.
한국교육개발원(1999a).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_____(1999b).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인권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_____(2003). 교육통계연보.
한국노동연구원(199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_____(2000).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 아동발달백서.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청소년의 우울.
_____(2000). 방과 후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8.
_____(2001). 청소년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문제 정책 포럼 자료집.
홍나미・정영순(1999). 청소년 자살 생각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4호.
황창순 외(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인터넷자료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j.go.kr (법부무).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nhapnews.net (연합뉴스).
http://www.yrights.or.kr (청소년인권센터).

부 록

청소년 인권 주요 법률내용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		국내법의 기준	
1조 아동 청소년의 정의	출생시부터 18세까지의 연령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	아동복지법
2조 차별방지	사회적 출생, 재산 무능력,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차별항이 없이 권리 존중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
13조 표현의 자유	구두, 필기, 인쇄 예술의 형태 모든 아동, 청소년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 아동의 시민, 정치적 권리, 곧 사상 양심, 종교,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담고 있음.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되어야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제 금지.	헌법 제 21조 1항 2항
14조 사상양심 종교의자유	“아동의 능력 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라는 표현과 부모와 후견인의 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19조 20조
16조 사생활의 권리	사생활, 명예, 소망 부모의 권리와 교육의 권리에 대한 반발 및 가정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성인의 권리와 마찬가지의 권리가 아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7조 18조
17조 대중매체	적합한 정보에 대한 공조	유해한 영화 도서 간행물 광고물의 제작, 판매, 공매 중지	아동복지법 제 18조
19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의 학대화 방임 문제에 관심을 두며 적절한 경우에 사법적 개입 가능이 명시됨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 18조
23조 장애아동	정신적,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랑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여건속에서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지	장애아동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 안정과 지원이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 11조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		국내법의 기준	
31조 휴식여가 문화생활	휴식과 여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정. 문화, 예술적 생활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생활 전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연극, 영화, 전시등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아동복지법 제 10조
33조 아동노동	경제적 착취 및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13세 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 근로자로 보호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 초과 중지.	근로기준법
34조 성적착취	성을 이유로 하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아동복지법, 형법, 윤락 행위등 방지법에서 성적 착취와 학대의 금지.	아동복지법
42조 협약홍보의 의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43조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설치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44조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		

자료 : 광주 청소년인권센타(2003).

청소년보호 2003-18

2003 청소년보호백서

발행인	이승희
발행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운영과
전 화	(02) 735-2648
발행일	2003. 10.
인 쇄	
ISBN	89-8473-174-9